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서'(1541)로부터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1619)까지

김은수

(백석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서'(1541/1561)에 나타난 직분제도
- III. 프랑스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
- IV.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
- V. 결론과 제언

[초록]

본 논문은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의 여러 핵심적인 요소들 가운데서 특히 ‘교회의 개혁’ 분야에 있어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의 개혁’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와 실천의 발전 역사를 중심으로 그 중요한 원칙들과 특징적인 요소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살펴 본 것이다. 그러한 연구 분석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살펴 본 중요한 자료들은 먼저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의 근간이 된 것으로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면서 작성한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Projet D'ordonnances Ecclésiastique*, 1541)와 그것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제네바 교회법규서』(*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1561),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그의 주요 저작들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칼빈의 신학사상과 “제네바 교회법규서”의 모범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또 다른 중요한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프랑스 신앙고백서』(*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1559/1571)와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Discipline ecclesiastiques des eglise reformees de France*, 1559),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The Belgic Confession*, 1561)와 더불어 가장 완성된 형태로 개혁교회 교회법의 표준이 된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The Church Order of Dort*, 1619)를 중심으로 차례로 분석하며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마지막 결론과 적용으로써, 그러한 개혁교회 특유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에 나타나는 주요 원리들과 특징들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장로교회의 직분제도의 중요한 문제점들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집중적으로 모색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키워드: 종교개혁, 교회의 개혁, 개혁주의 직분제도, 교회정치 질서, 제네바 교회법규서,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

1. 들어가는 말

16세기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운동은 단지 신학이나 교회의 개혁운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서구역사의 흐름 자체를 바꾼 하나의 총체적인 개혁운동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1) 신학과 교리적인 개혁; (2) 교회의 개혁; (3) 일상의 삶의 형태와 사회구조의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으로 나아갔으며, 그것들은 서로 나눌 수 없도록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신학과 교리적인 개혁'은 소위 종교개혁신학의 '5-Solas 원리'²와 그것의 신학전체로의 확대 적용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신학적 원리에 따른 '교회의 개혁'은 예전(예배와 성례전)과 직제(직분제도) 그리고 교회 정치질서와 구조의 개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개혁운동은 비단 신학과 교회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의 형태 및 교육제도와 사회구조,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역할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실천으로 계속하여 큰 영향을 미치며 이어졌다.³

1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2013902).

2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의 '신학적 대원리'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음의 '5-Solas 원리'로 요약되어 진다: 1. Sola Scriptura(오직 성경만으로), 2. Sola Fide(오직 믿음만으로), 3. Sola Gratia(오직 은혜만으로), 4. Solus Christus(오직 그리스도만으로), 5.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의 영광).

3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신학과 실천에 있어 그러한 종교개혁운동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그의 (1) 이신칭의 교리, (2) 만인제사장론, (3) 성(聖)과 속(俗)의 구분타파와 일상의 삶에 대한 개혁의 요구로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소위 그의 '종교개혁을 위한 3대 논문'이라 일컬어지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보내는 글',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만 읽어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Cf. Martin Luther,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3). 나아가 종교개혁운동의 이러한 종합적인 비전이 칼빈의 신학과 목회적 실천 속에서는 "잘 정돈된 개인", "잘 정돈된 교회", "잘 정돈된 사회와 국가"라는 하나의 체계화된 종합으로 나타났다. 레오폴드 슈머(Léopold Schümmerr)는 이러한 칼빈의 종합적인 비전을 "칼빈의 기독교 철학"(la philosophie chrétienne) 혹은 "칼빈의 종합"(synthèse de Calvin)이라고 부르고 있다. Léopold Schümmerr, *La foi, l'action, le social, actualité du message politique et social de Jean Calvin* (Aix-en-Provence: Editions Kerygma, 2006), 11, 13, 21, 29, 32. 여기에서는 김선권, "갈뱅이 말하는 '잘 정돈된 삶'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 『한국개혁신학』 제42권 (2014), 12를 참조함. 이와 같이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이 유럽역사에 미친 총체적인 영향에 대한 대중적인 저술로는 Cater Lindberg, *The European Reformations*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Ltd.,

본 논문에서는 종교개혁운동의 그러한 총체적인 개혁을 위한 여러 핵심 요소들 가운데서도 ‘교회의 개혁’ 분야에서 특히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의 개혁’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와 실천의 발전 역사를 중심으로 그 중요한 원칙들과 특징적인 요소들을 살펴 볼 것이다. 그렇게 함에 있어 우리가 살펴보며 연구할 중요한 자료들은 먼저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의 근간이 된 것으로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면서 작성한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Projet D'ordonnances Ecclésiastique*, 1541)와 그것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제네바 교회법규서』(*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1561),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된 그의 주요 저작들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칼빈의 신학사상과 “제네바 교회법규서”의 모범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또 다른 중요한 발전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의 직분제도와 정치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프랑스 신앙고백서』(*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1559/1571)와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Discipline ecclesiastiques des eglise reformees de France*, 1559),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서』(*The Belgic Confession*, 1561)와 더불어 가장 완성된 형태로 개혁교회 교회법의 표준이 된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The Church Order of Dort*, 1619)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⁴ 그 연후에 마지막 결론으로서, 그러한 개혁교회의 특유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에 나타나는 주요 원리들과 특징들을 통하여 오늘날 한국장로교회의 직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10), 조영천 역, 『유럽의 종교개혁』 (서울: CLC, 2012); Michael Welker, et al, ed. *Europa Reformata: Reformationsstädte Europas ihre Reformatoren*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GmbH, 2016), 김재진 외 16인 역, 『종교개혁, 유럽의 역사를 바꾸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를 참조하라.

4 여기에 언급된 문서들과 더불어 특히 개혁파 장로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에 관련된 광범위한 역사적인 ‘교회법’의 일차문헌들에 대한 영문번역 자료는 David W. Hall & Joseph H.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4)를 참조하라.

II.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서’(1541/1561)에 나타난 직분제도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은 먼저 신학과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졌으나, 그와 동시에 그에 따른 새로운 개혁교회를 확고하게 정립하여 질서 있게 바로세우고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교회법규’가 필요함을 칼빈은 절감하였다. 즉, 1차 제네바 체류시의 종교개혁운동에 따른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한 추방(1536-38),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서 약 3년 동안(1539-41)의 성공적인 목회 경험이 축적되면서 칼빈은 더욱더 ‘가시적 교회’(visibili ecclesia)의 중요성과⁵ 더불어 이 교회를 질서 있게 바로세우고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에 대한 교회법규의 제정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면서 제네바 시의회의 재청빙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적절한 교회개혁의 제도적인 장치로서 교회법령의 제정을 요구하였고,⁶ 그 결과물이 바로 그의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Projet D'ordonnances Ecclésiastique*, 1541)이다.⁷ 그리고 칼빈이 이때 작성한

5 이러한 목회현장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칼빈은 특히 ‘가시적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어머니’(matris)로서의 교회는 신자들의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여 기르며, 교육하여 가르치는 역할을 가짐을 강조한다.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Calvini Opera*, vol. II; [영역]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vol. II; [한역] 『기독교 강요』(하), 김종흡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IV.i.4-5.

6 Cf. Theodore Beza, *The Life of John Calvin* (Durham, England: Evangelical Press, 1997), 김동현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서울: 목회자료사, 1999), 59-61. 참고로 당시 ‘제네바 시의회 기록부’(Annales, 1541)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예안 칼뱅(Iehan Calvin), 복음 사역자. 이 사람은 스트라스부르로부터 도착했는데 . . . 그는 교회가 질서 있게 잘 정돈되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법규를 제정해야 하고 또 법규를 제정할 위원회를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럴 경우] 자신은 언제나 제네바의 종으로 헌신하겠다고 서약 하였다.” *Calvini Opera*, vol. XXI: 282; Cf. T.H.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81, [한역] 김지찬 역, 『존 칼빈』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193.

7 칼빈이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후 보름 만에 작성하여 제출한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1541)를 제네바 시의회는 소회와 200인 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 총회에서 영원히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1541.11.20.에 정식으로 공포됨). Cf. Beza,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61, n.1;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82, [한역] 김지찬 역, 『존 칼빈』, 194; 김선권, “칼뱅의

이 “제네바 교회법규서”는 이후 개혁파 장로교회의 제도적인 기초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이 미친 교회와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함에 있어, 교회사가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3)는 “칼빈의 사역에 있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적, 실천적인 부분이 그의 신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⁸

비록 칼빈이 1536년 기욤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의 강력한 요청으로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운동을 적극 주도하면서 그 시초에 교회개혁을 위하여 『제네바 교회조직과 예배에 대한 규정』(1537)을 작성한바 있으나,⁹ 개혁파 장로교회의 직분제도의 기초가 처음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 것은 그의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1541)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칼빈의 교회관’에 대하여 연구한 오토 베버(Otto Weber, 1902-1966)에 따르면, 칼빈이 이해한 교회관의 특징은 무엇보다 “직분을 중심한 교회”(Amtskirche)이며, “교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하여 존속하기 때문에, 교회(Kirche)를 주로 직분자의 조직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개신교 역사에서 칼빈만큼 직분에 큰 의미를 부여한 사람을 없다”고 강조한다.¹⁰ 그러한 칼빈의 직분제도에 대한 이해가

교회 정치제도와 교회법에 대한 연구, 노영상 편,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법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회법에 대한 비교 연구』(서울: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17), 21. 그리고 이때 칼빈이 작성하여 제출한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 초안의 원문은 “Projet D’ordonnances Ecclésiastique”(1541), *Calvini Opera*, vol. X: 15-30; 이 문건의 영역은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The Library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56-72; 그리고 한역은 “제네바 교회법 초안”(1541), 김명순/김현수/코넬리스 반 담, 『칼빈의 예배개혁과 직분개혁』(서울: 성약출판사, 2013): 153-65를 참조하고, 더불어 이 초안에 제네바 시의회의 서문이 포함된 최종 승인 문건의 번역문은 “제네바 교회법규”(1541), 박건택 편역, 『칼뱅 작품선집』, vol. I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130-51을 참조하라.

8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1: *The History of Creeds* (Grand Rapids: Baker Books, 1983 Reprinted), 460.

9 John Calvin,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église et du Culte a Genève, Proposé au Conseil par Ministres”(1537), *Calvini Opera*, vol. X: 5-14; [영역]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The Library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48-55; [한역] “교회 설립 시안”(1537), 박건택 편역, 『칼뱅 작품선집』, vol. 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323-36을 참조하라.

명확한 체계를 갖추고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541년의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이며,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제3개정판(1543년)부터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적용되어 나타난다. 또한 그로부터 20년 후, 칼빈은 그동안 몇 차례 수정, 증보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다시 개정 확대한 『제네바 교회법규서』(*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1561)를 작성하였다.¹¹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주로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1541), 『제네바 교회법규서』(1561), 그리고 『기독교 강요』(1559, 최종판)¹²을 중심으로 그의 직분제도 이해에 나타난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¹³

1. 직분의 종류와 직무

교회의 직분과 관련하여,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초판, 1536)에서는 ‘목사’(감독/장로/교사)와 ‘집사’에 대하여,¹⁴ 그리고 『제네바 교회조직과 예배에 대한

10 Otto Weber, 『칼빈의 교회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영재 역 (서울: 풍만출판사, 1985), 65f.

11 John Calvi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Calvini Opera*, vol. X: 91-124; [한역] 박건택 역, “제네바 교회법규”(1561), 『칼뱅 작품선집』, vol. V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635-80.

12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Calvini Opera*, vol. II; [영역]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vol. II; [한역] 『기독교 강요』(하), 김종흡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 3장에서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13 칼빈의 ‘교회 직분관’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형기, “[칼빈의] 직제론: 루터와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79-343; 황대우, “칼빈의 교회 직분론: 교회 건설을 위한 봉사과 질서”, 『칼빈과 교회』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07), 173-93; Cornelis Van Dam, “칼빈의 직분개혁”, 『칼빈의 예배개혁과 직분개혁』 (서울: 성약출판사, 2013), 91-112; 김선권, “칼뱅의 교회 정치제도와 교회법에 대한 연구”, 노영상 편,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법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회법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17), 11-48, etc.

14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36), *Calvini Opera*, vol. I, 141-95;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1536 초판 한-라틴어 대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v.54-65. 칼빈은 여기서 로마 가톨릭의 위계적인 교황제 직분제도[cf. 성직자의 신품성사 제도: 교황-(추기경-대주교-)주교-사제-부제(-서리부제-측귀사-독경사-문지기)]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감독, 장로, 목사, 교사’의 직분을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v.54-64), 또한 그들에 의해 임명되는 ‘집사직’만 따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v.65).

규정』(1537)에서는 말씀과 성례의 시행을 담당할 목사직(목회자)과 더불어 또한 신자들의 생활을 살피고 감독하기 위하여 일반신자(평신도)들 가운데서 선출된 ‘직분자’들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도 ‘[평신도] 장로직’에 대한 암시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¹⁵ 그러나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최종판, 1559)에서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더욱 체계화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먼저 교회직분을 “비상직분”(임시직분; extraordinary/temporary offices, 신약교회의 초창기에 교회의 창건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세워진 직분)과 “통상직분”(항존직분; ordinary/permanent offices, 교회에 통상적으로 항상 있어야 할 직분)으로 구분하여, 비상직분으로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그리고 통상직분으로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언급한다.¹⁶ 나아가 『제네바 교회법규』(1541)에서 칼빈은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통상직분’(항존직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더욱 분명하게 ‘네 가지 직분’을 명시하여 체계적이고도 상세하게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교회 통치를 위해 제정하신 네 가지 직분의 질서가 있다. 곧 목사(pasteurs/pastors), 그리고 교사(박사, docteurs/doctors), 다음으로 장로(anciens/elders), 네 번째로 집사(diacres/deacons)이다. 우리가 ‘잘 정돈된 교회’(l’Eglise bien ordonnee)를 가지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원한다면 마땅히 이 제도(치리) 형식을 유지해야 한다.¹⁷

15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헌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모든 신자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과 선한 증거를 가지며 또한 매우 깨끗하고 결코 쉽게 부패하지 않는 몇 명을 선출하고 임명하되 그들로 도시의 전 구역을 분담하여 각자의 생활을 감시하고 감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어떤 사람에게 책망할 명백한 악덕을 볼 경우 그들은 목회자들 중 누구와 연락하여 잘못된 자는 누구라도 훈계하고 스스로 고치도록 형제애로 권면해야 합니다.” Calvin,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église”(1537), 10; “교회 설립 시안”(1537), 330-31. 그러나 이 초기 문서에서 칼빈은 아직 평신도들이 감당할 구체적인 교회의 직분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는다.

16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ii.4-9.

17 Calvin, “Projet D’ordonnances Ecclesiastique”(1541), 15-16;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 58;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1541), 131-32; “제네바 교회법규”(1561), 638 (강조는 필자의 첨가임).

이러한 칼빈의 '4 직분론'은 그가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 특히 요하네스 외콜람파디우스(Johannes Oecolampadius, 1482-1531)와 마르틴 부쎈(Martin Bucer, 1491-1551)에게서 받은 영향이 크다.¹⁸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교회의 '4 직분론'을 당시 제네바 시의 상황에 알맞도록 훨씬 더 조직적으로 체계화하였으며, 각각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목사(Pasteurs): “성경이 또한 때로 감독(Surveillans), 장로(Anciens), 목회자(Ministres)라고 명명하는 목사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들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과 성례를 집행하고 장로나 위임된 자들과 더불어 우애적인 징계(corrections)를 행하는 일이다.”¹⁹

(2) 교사(박사/교수, Docteurs): “교사들의 고유의 직무는 신도들을 건전한 교리로 가르쳐서 복음의 순수함이 무지나 잘못된 견해로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칭호를 하나님의 교리를 보존하기 위한 도구요, 또 목사들과 사역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가 황폐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들로 이해한다. 이처럼 보다 감지하기 쉬운 말을 사용하면 우리는 이 칭호를 학교 교육직분(ordre des escoles)이라고 부를 것이다

18 Cf. Weber, 『칼빈의 교회관』, 67; 이형기, “[칼빈의] 직제론: 루터와 관련하여”, 302f. 요하네스 외콜람파디우스는 스위스 바젤에서 종교개혁운동을 이끌었으며, 특히 교회 정치질서와 권징치리, 그리고 직분제도와 관련하여 정교분리 원칙과 더불어 평신도 장로제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그의 교회 직분관은 마르틴 부쎈에 의해 계승되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에서 종교개혁운동을 이끌었던 마르틴 부쎈은 그의 『참된 목회학』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돌보기 위한 ‘일상적 사역자’(gemeine diener, 통상직분)로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의 네 가지 직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마르틴 부쎈의 교회 직분론과 관련해서는 Martin Bucer, *Von der waren Seelsorge und dem rechten Hirtendiens* (1538), 최윤배 역, 『참된 목회학』 (용인: 킹덤북스, 2014), 70-87; 최윤배, 『잊혀진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420-43을 참조하라.

19 Calvi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93; “제네바 교회법규”(1561), 638. 이와 같이 칼빈에 따르면, 목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직무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1) 순수한 말씀을 선포하고 참된 경건을 가르치는 일; (2)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는 일; (3) 올바른 치리(권징)를 유지하며 시행하는 일. Cf.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ii.6.

.”²⁰

(3) **장로(Anciens)**: “그들의 직무는 모든 이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넘어지는 자들과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보게 될 때 친절하게 훈계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형제애적인 징계를 위해 만들어질 위원회에 보고하여 다른 이들[cf. 목회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행할 것이다.”²¹

(4) **집사(Diacres)**: “고대 교회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다. 한 부류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산, 즉 매일 매일의 구호금뿐만 아니라, 재산, 대출, 그리고 생활보조금을 수납하고, 분배하며, 보관하는 일을 위임 받았다. 다른 한 부류는 병자를 돌보고 치료하며 가난한 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일로서 이런 관습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²²

2. 교회 직분자의 선출과 임기

(1) **목사의 직분과 관련하여**, 칼빈은 무엇보다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자격검증’이 필요함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검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곧 ‘교리’와 ‘삶의 품행’이다. 목사의 임직과정은 먼저 목회자들에 의해 선정된 사람이 시당국 소의회에서의 검증과 교회 회중의 공동 동의를 거쳐 수용되면, 목회자 대표에 의한 선포와 권면, 그리고 시의회 앞에서의 서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²³ 그리고 목사에 대한 권징(discipline)은 먼저 법규에 규정된 ‘용납되지 않는 범죄’들(18가지 항목)과 교회 치리회(Consistoire ecclésiastique)와 관련된 다른 범죄들에 연관될 경우에는 시당국의 최종판결에 따라 처벌과 더불어 면직되도록 했고, 또한 법규에 규정된 ‘경범죄’들(17가지 항목)에 연관된 경우에는 교회 치리회의 판결에 따라 적절하게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²⁴

²⁰ Calvi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100; “제네바 교회법규”(1561), 649.

²¹ Calvi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100; “제네바 교회법규”(1561), 650.

²² Calvi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101; “제네바 교회법규”(1561), 651f.

²³ Calvi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95f; “제네바 교회법규”(1561), 638-42.

²⁴ Calvi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97; “제네바 교회법규”(1561), 642-45.

(2) 교사의 직분은 ‘참된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인데, 먼저 성경 해석과 신학교육을 위하여 ‘박학하고 노련한 인물’(cf. 박사/교수, docteurs)을 채용하고, 또한 그의 책임 하에 언어와 대화법 등 인문학의 기초학문을 가르칠 ‘강사’(lecteurs)와 어린 아이들을 교육할 ‘학사’(bacheliers)를 두도록 했다. 이들은 모두 반드시 목회자들에 의한 선정 절차와 시의회 위원들 앞에서 시험을 거쳐 임용되도록 했고,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징치리에 순복할 것이 요구되었다.²⁵

(3) 장로의 직분과 관련하여, 칼빈은 이들을 “정부당국이 치리회(Consistoire)에 위임하고 파송한 장로”로 규정하며, 당시 교회형편에 따라 소의회에서 2명, 60인회에서 4명, 200인회에서 6명(총 12인)을 신앙과 삶에 있어 가장 적합하고 신실한 자들 가운데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선정한 일반신도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직분자들이다. 그 선출 과정은 먼저 소의회에서 임명을 위해 사람들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이들에 대하여 목회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이들을 선택한 다음, 최종적으로 200인회에서의 승인과 서약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 장로직의 임기는 1년이며, 매년마다 시의회 선거후에 정부당국 앞에 출두하여 연임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검토 받도록 했고, 직무에 충실할 경우에는 자주 교체하지 않도록 했다.²⁶

(4)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칼빈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직제에서 거의 폐기되다시피 한 집사직분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그 고유직무를 원형대로

25 Calvin, “Projet D’ordonnances Ecclésiastique”(1541), 21f;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1541), 137f. 참고로 이 교사직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식’이 이후 개정 확장되어 작성된 ‘제네바 교회법규’(1561)에서는 생략되었는데, 이것은 이때 20년 동안의 계획과 준비 끝에 마침내 설립된 ‘제네바 아카데미’(1559.6.5.에 공식 개교함)의 ‘학교규정집’(Ordre des Ecoles)에서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네바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L’ordre du Collège de Genève”(1559), *Calvini Opera*, vol. X, 65-90 및 이 문건에 대한 번역으로는 황대우 역, “제네바 아카데미의 규정”, 『갱신과 부흥』 제13권 (2013), 84-99; “제네바 콜레주 규정”(1559), 박건택 편역, 『칼뱅 작품선집』, vol. V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617-34를 참조하고, 또한 그 구체적인 활동상에 대하여는 박경수, “개혁교회의 요람 제네바 아카데미에 관한 연구”, 『종교개혁과 교육』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7), 175-204를 참조하라.

26 Calvi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100f; “제네바 교회법규”(1561), 650-51.

복원함과 동시에,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구제 사업[구제 물자를 나누어주는 일을 관리하는 집사들과 직접 빈민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들](롬 12:8)의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²⁷ 그리고 당시 제네바 시와 교회의 형편에 따라 구빈원(hôpital)의 ‘재정 담당자들’(procureurs)과 ‘구호소 봉사원들’(hospitaliers)이 그 직무를 맡도록 하였다. 이러한 집사 직분자들의 선임은 당시의 교회 형편을 반영하여 ‘치리회’(Consistoire, 당회)에 속한 장로들과 정부 대표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그 선택 기준은 사도 바울이 정한 ‘디모데전서 3장’의 집사 선출에 대한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집사들의 구빈원의 운영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목회자들과 정부대표 혹은 장로들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²⁸ 이들의 임기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로들의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본다.²⁹

3. 칼빈의 직분제도 이해와 실천에 있어 몇 가지 특징들

(1)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 따른 교회 직분제도의 복원:** 칼빈은 무엇보다 질서 정연하게 ‘잘 정돈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올바른 교회 직분제도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때 그는 무엇보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칼빈은 『제네바 교회법규』(1541/1561)에서 “이 법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³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제도 이전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른 고대교회의 직분제도와 교회정치를 복원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칼빈은 종교개혁 초기의 혼란스러웠던 당시 제네바 교회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하여 실행하였다.³²

(2) **교회 직분의 고유성과 동등성, 그리고 유기적인 상호협력:** 칼빈의 신학적

27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ii.9.

28 Calvi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101f; “제네바 교회법규”(1561), 651-53.

29 Cf. 김선권, “칼뱅의 교회 정치제도와 교회법에 대한 연구”, 34.

30 Calvin, “제네바 교회법규 제안서”(1541), 131; “제네바 교회법규”(1561), 638.

31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v.

32 Cf. Weber, 『칼빈의 교회관』, 68f.

이해에 있어 교회와 직분이해는 그의 택하신 언약백성, 곧 교회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정위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에 근거하며,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을 칼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떼’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엡 1:22-23), 그에게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롬 12:5; 고전 10:17, 12:12, 27)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엡 4:16).”³³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모두 그의 다스리심 아래 그가 제정하신 질서와 조직에 따라 서로 연합된다”(엡 4:16).³⁴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하시며 다스리시는데, 각 지체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신다. 이때 “각각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엡 4:7) 각 지체에게 고유한 기능을 부여 하신다(엡 4:16).”³⁵ 나아가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육의 책임을 맡은 어머니된 교회’에 접붙이시고, 각 지체들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 각양 은사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³⁶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여러 가지로 상이하게 분배되며, 교회의 직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러한 성령의 은사에 기초한다.³⁷ 이와 같이 칼빈의 삼위일체론적인 교회 이해와 직분관에 따르면, 성부의 선택과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분량,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기초한 교회의 각 직분들에는 본질적으로 그 ‘고유성과 동등성(평등성)’이 전제되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의 선택과 은혜, 그리고 은사의 ‘고유성과 동등성(평등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모든 직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신자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한가지로 봉사하기 위하여

33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2.

34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vi.9.

35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vi.10.

36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II.i.1; IV.i.3.

37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3-7, IV.iii.11.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상호 협력하여야만 한다.³⁸

(3) **교회의 직분제도에 있어서의 질서**: 칼빈의 직분제도 이해 있어 그 중심원리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권과 권위이며, 오직 “이 권위는 그의 말씀에 의해서만 행사된다”고 강조한다.³⁹ 그러므로 칼빈은 성령의 은사에 기초한 교회의 각 직분에 고유성과 동등성이 있지만, 또한 그의 『제네바 교회법규』에서 제안하듯이, 이러한 ‘말씀의 권위와 우위성’에 근거하여 교회의 네 가지 직분에는 일련의 ‘질서’(ordre)가 있다고 보았다(목사-교사-장로-집사). 즉, 모든 직분 가운데 “복음 선포의 직분” 곧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을 담당하는 ‘목사’의 직분, 그 다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⁴⁰ 나아가 그러한 목회자들과 더불어 또 다른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항존직분)으로서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야 하며, 이들은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 선출된 ‘장로’들과 ‘집사’들이 감당하도록 하였다.⁴¹ 이때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치리회’를 구성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교회의 권징, 곧 ‘다스리는 일’을 수행한다.⁴² 또한 성경과 고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은 집사 직분의 고유한 직무이기는 하나, 전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사와 장로들의 감독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⁴³

38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3, IV.iii.1-2.

39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ii.1.

40 이와 같이 칼빈이 특히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시행’하는 목사의 직분을 강조하는 것은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실한 시행”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보는 것에 상응한다. Cf.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9-12. 칼빈에 의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없이는 교회가 계속하여 존속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심지어 교사는 고대의 ‘선지자’와, 그리고 목사는 ‘사도’와 서로 쌍으로 상응하는 직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목사’와 ‘교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사와 교사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되는 직분들이다. 그 차이점은, 교사들은 치리나 성례집행, 권고와 권면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을 맡는데, 이는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목사직분은 이 모든 것에 관여한다.”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ii.3-6.

41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ii.8-9.

42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과 고대 교회의 전통에 따라 교회의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치리 장로)로 구분한다. Cf.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v.1, IV.xi.1.6.

43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v.5.

(4) **교회 공동체에 의한 직분자 선출과 임직 및 직무수행과 권징의 원칙:**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황제 체제에서 주교와 사제를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 고대 교회에서 회중 공동체(일반성도들)에서의 투표, 찬성, 서명승낙 등의 절차를 통해 임직하던 것으로부터 부패한 결과이며, 이러한 위계적인 “교황제도 전체가 고대 교회정치의 형태를 완전히 전복”시킨 “해괴한 악폐”라고 조목 조목 비판한다.⁴⁴ 따라서 칼빈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비록 그 본질적인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각 직분의 사역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회중들에 의한 투표(선거), 혹은 합의와 승인을 얻어서 선출되는 방식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성경적인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동시에 칼빈은 직분자들의 선택을 위한 그러한 선출과 임직의 모든 과정이 객관적이고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⁴⁵ 나아가 그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되어 임직된 모든 직분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와 선한 신앙양심에 따라 성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직무수행 규칙과 더불어 권징규칙을 만들어 항시적으로 그 직무수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 하였고, 그 임기에 따라 교회공동체에 의하여 다시 평가받고 재신임 여부를 승인받도록 하였다.⁴⁶

(5) **그리스도 통치 주권의 ‘위임(대리)정치’ 및 교회 공동체의 선거에 의한 ‘대의정치’ 원리:** 앞서 살펴 본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칼빈이 이해한 교회 정치질서와 직분제도에 있어 ‘제일의 대원칙은 먼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원리’이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그를 대리하는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의 직무를 위임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다스리심은 그가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⁴⁷ 이것을 우리는 개혁교회

44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v.1-7.

45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ii.13-16.

46 Calvi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91-124; “제네바 교회법규”(1561), 635-80;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ii.1-16, IV.xiii.1-22.

47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ii.1-2. 이에 대한

정치에 있어 “그리스도 통치주권의 위임(대리)정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삼중직분’, 즉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신다.⁴⁸ 그러므로 교회의 세 가지 항존직분인 ‘목사(교사), 장로, 집사’의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의 위임에 근거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 ‘선지자’의 직분 -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의 직분, (2) ‘왕’의 직분 - 교회의 회중을 감독하고 치리하는 장로의 직분, 그리고 (3) ‘제사장’의 직분 -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구제하는 집사의 직분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주권의 위임에 따라 그 분배된 직무들을 각기 나누어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없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에 있다.

또한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통치 주권은 어느 한 사람이나 일부 집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전체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직무는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점될 수도 없고 독점되어도 안되며, 동시에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원칙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선택하고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소명과 성령의 은사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교회 회중들의 투표와 선거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⁴⁹ 이것은 개혁교회 정치와 직제에 있어 또 다른 대원칙인 교회 공동체

칼빈의 직접적인 몇 가지 언명들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으나 그것은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이양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IV.iii.1). 또한 “하나님께서서는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사람의 봉사를 사용하시며, . . . 하나님께서는 이 직책을 그의 사역자들에게 위탁하시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통하여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시며, 그의 이 제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친히 임재하신다”(IV.iii.2).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대로 교회의 정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첫째로 사도, 다음은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넷째는 목사, 마지막으로 교사라고 부른다(엡 4:11). 이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만 교회내의 평상직이요, 처음 세 가지는 주께서 그의 나라의 초창기에 세우셨고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키신다”(IV.iii.4).

48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I.xv.

49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기독교 강요』, IV.iii.13-15.

회원들의 직분자 선출에 의한 “대의정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회중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직분자들이 서로 연합하고(위원회/당회) 상호 협력적인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또한 그들은 그 임직과 직무수행에 있어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와 그가 세우신 질서로부터 이탈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항상 상호 견제와 더불어 회중들의 동의와 수용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혁교회는 ‘감독제’와 ‘회중주의’와는 다른 특유의 교회 직분제도와 교회 정치질서 체제를 제시하였고, 이것은 근/현대 세계역사에 있어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6) 제네바 교회의 개혁을 위한 4가지 직분과 4가지 협력기관의 설립: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성경의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질서 있는 교회로 바로 세움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보존하며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각 조치들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시의회와의 협력 속에 긴급하고도 강력하게 실행해 나갔는데, 그것은 곧 교회의 ‘네 가지 직분의 확립’과 그에 따른 ‘네 가지 협력기관의 설립’이 그것이다. 먼저, 칼빈은 『제네바 교회법규』(1541/1561)를 통해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회의 4가지 직분을 확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그 직분제도에 부합하여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그 직무를 실제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4가지 협력기구/기관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즉, 목사들은 ‘목사회’(Compagnie des Pasteurs)로, 장로들은 목사들과 함께 이루어진 ‘치리회’(Consistoire)로, 교사들은 ‘아카데미/콜레주’(Academia/College)로, 집사들은 ‘구빈원’(Hôpital)이라는 모임 및 기관을 구성하여 서로 협력하여 직무를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⁰

50 Cf. 제네바 교회의 4가지 직분 및 이와 관련하여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립된 4대 협력기관과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정숙, “칼빈의 제네바 목회”, 『칼빈, 그후 500년』,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두란노, 2009), 49-54; 임종구, 『칼뱅과 제네바 목사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207-30; Scott M. Manetsch, *Calvin's Company of Pastors: Pastoral Care and the Emerging Reformed Chur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신호섭 역,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의 활동과 역사: 개혁파 목회자 모임의 모델』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을 참조하라.

III. 프랑스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

칼빈의 신학사상과 제네바에서의 교회개혁 운동은 그의 소책자와 저서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교류와 서신왕래, 유럽 각국으로부터 제네바에 피신해 왔던 피난민 교회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에 의해 유럽의 각 곳으로 확산되어 졌다.⁵¹ 프랑스 개혁교회는 비록 1550년대 이후 칼빈의 신학적인 영향과 함께 제네바 개혁교회와 계속하여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프랑스에는 개신교 신자들(위그노)의 예배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신앙전통을 함께 보존하기를 원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독자적인 “신앙고백서”와 “교회치리서”를 작성하고 채택한 것이다.⁵² 여기에서는 그러한 칼빈과 제네바 개혁교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프랑스 개혁교회가 그들 자신들의 고유성과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직분제도와 정치질서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형성하였는지를 『프랑스 신앙고백서』(*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1559/1571 개정)와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Discipline ecclesiastiques des eglise reformees de France*, 1559)를 중심으로 그 고유한 특징들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⁵³

51 칼빈의 신학사상과 교회개혁 운동의 영향 및 그 확산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W. Stanford Reid, e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1982), 홍치모/이훈영 역,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양낙홍 역,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을 참조하라.

52 Cf. 황정욱, “앙트완 드 상디유의 생애와 사상”,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46-48.

53 여기에 언급된 문서들에 대한 영문번역 자료는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34-39; 156-58을 참조하라. 특히 『프랑스 신앙고백서』(*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1559/1571)와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Discipline ecclesiastiques des eglise reformees de France*, 1559)는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은 자료들이다.

1.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1571)

1533년 칼빈은 스스로 '복음적 신앙으로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회심'과 함께 그해 만성절(All Saints' Day, 1533.10.31)에 있었던 니콜라스 콕(Nicolas Cop)의 파리대학 학장취임 연설문 대필사건에 연루되어 급박하게 파리를 떠나 피신하여,⁵⁴ 여러 곳을 전전하다 '벽보사건'으로(1534.10) 인해 상황이 더욱 위급해지면서 결국 프랑스를 떠나 스위스 바젤에 도착하였고(1535.1), 1536년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망명길에 잠깐 들리고자 의도했던 제네바에서 기욤 파렐을 통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본격적인 종교개혁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⁵⁵ 이와 같이 칼빈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 프랑스에서는 극심한 박해 때문에 단지 소수의 개혁파 신자들(위그노, Huguenots)이 각 곳에 흩어져 있었고, 1555년에야 처음으로 파리에서 '제네바 교회모범'에 따라 공식적으로 개혁신교회가 조직되었다. 이후 1555-1562년 사이에 제네바에서 훈련받은 약 90명의 목회자들이 프랑스로 비밀리에 파송되었다.⁵⁶ 1559년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전국적인 총회 모임을 준비하면서 칼빈에게 그들을 위한 신앙고백서의 초안 작성을 요청하였고(총35개 항목으로 구성됨), 그의 제자인 앙트완 드 샹디유(Antoine de Chandieu, 1534-1591)가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만든 것이 총40개 항목으로 구성된 『프랑스 신앙고백서』(*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 1559/1571 개정)이다.⁵⁷ 따라서 이 『프랑스 신앙고백서(갈리칸 신앙고백서)』는 그의 조국인 프랑스

54 칼빈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된 것이 확실한 이 사건에 사용된 연설문의 영역본이 배틀즈(Ford L. Battles)의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년 초판본)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Appendix III: The Academic Discourse Delivered by Nicolas Cop," 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363-72.

55 칼빈의 생애에 대하여는 Theodore Beza, *The Life of John Calvin* (Durham, England: Evangelical Press, 1997), 김동현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서울: 목회자료사, 1999); T.H.L. Parker, *John Calvin: A Biograph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김지찬 역, 『존 칼빈』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Willem van't Spijker, 『칼빈의 생애와 신학』,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Bruce Gordon, *Calv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9), 이재근 역, 『갈렙』 (서울: IVP, 2018) 등의 자료를 참조하라.

56 Cf. Spijker, 『칼빈의 생애와 신학』, 262.

57 앙트완 드 샹디유(Antoine de Chandieu, 1534-1591)는 프랑스 마콩(Mâcon) 인근 샤보트 성(Château de Chabottes)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종교개혁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파리에

개혁교회를 향한 칼빈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⁸ 이 신앙고백서는 당시 프랑스 전국에 흩어져 있던 100여개 개혁교회 가운데 66개 교회의 대표들(목사와 장로들)이 파리에서 비밀리에 회합하여 3일 동안 개최한 ‘제1회 프랑스 개혁교회 전국대회’[1559.5.26.-28, 이때 파리교회의 목사였던 프랑수아 드 모렐(Francois de Morel)이 의장직을 맡음에 제출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10년 후 라 로셸(La Rochelle)에서 개최된 ‘제7회 프랑스 개혁교회 총회’[1571,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가 의장직을 맡음]에서 개정 보완된 문헌(총40개 항목으로 구성됨)이 정식으로 승인되어 채택되었다.⁵⁹

이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제27조-제33조’에서 우리의 관심주제인 교회와 직분제도, 그리고 교회법과 권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27조’에서 ‘교회’라는 명칭의 잘못된 오용을 막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별’을 위하여,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란 그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교리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된 믿는 자들의 회집이라고 부른다.”⁶⁰ 나아가 ‘제28조’에서는 부패한 “교황주의에 대한 반대”

서 교육을 받은 후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 칼빈과 베자로부터 신학을 배웠으며, 15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바 교회에서 신학훈련을 받고 프랑스로 비밀리에 파송되기 시작한 여러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는 1555년 이후부터 파리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며 지방 여러 곳의 위그노 개혁교회를 도왔다. 그는 극심한 박해 아래서 보다 질서 잡힌 프랑스 개혁교회의 조직과 보존을 위해, 1559년 파리총회 모임을 준비하며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교회치리서”의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프랑스 당국과 위그노들 사이에 벌어진 수차례에 걸친 종교전쟁 기간 동안에도 교회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으며, 1572년 8월 성바돌로매 축일에 일어난 ‘위그노 대학살 사건’ 이후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하여 프랑스 피난민 개혁교회를 섬겼고, 잠시 로잔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직을 맡아 연구저술 작업을 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프랑스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한사람으로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다 제네바에서 교회를 위한 그 헌신적인 삶을 마쳤다(1591.2.23). Cf. 황정욱, “앙트완 드 상디유의 생애와 사상”, 35-46.

58 그러나 당시 칼빈 자신은 파리에서의 총회 모임 자체에는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러한 전국적인 큰 모임이 오히려 대결적인 상황에 있던 프랑스 당국의 가톨릭교회 진영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박해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Cf. Spijker, 『칼빈의 생애와 신학』, 262.

59 Cf. 장대선,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 (서울: 세움북스, 2017), 7f; 김영재 편, 『기독교 신앙고백』 (서울: 영음사, 2011), 141-53; Spijker, 『칼빈의 생애와 신학』, 262-66; 서요한, 『종교개혁사』 (서울: 그리심, 2013), 394-96; Pierre Courtial, “프랑스 칼빈주의 황금기: 1533년에서 1633년까지”,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83-108.

60 장대선,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 260.

를 명확하게 천명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아직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음과 그들에게서 이미 받은 세례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함을 인정하나, 그들의 성례 시행에 있어 섞여있는 부패함 때문에 아이들이나 새 신자들이 그들에게서 세례받는 것 자체는 금지한다.

다음으로 ‘제29조’에서, “참된 교회”에 있어야 할 질서와 직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9조. 우리는 참된 교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립된 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그러한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가 있는 까닭은 순전한 교리를 전수하고, 악덕을 개혁하고 억제하며,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구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집회에서 성인과 아이들 모두 교회(경건의 훈련)하기 위해서이다.⁶¹

여기에서 교회의 정치제도와 직분 등은 오직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만 규정되고 수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나아가 교회의 직분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언급하며, 그 고유한 직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는 ‘교사(박사)’의 직분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박해받고 있던 당시의 프랑스 개혁교회에서 자체의 신학교 설립과 운영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형편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신에 뒤에서 살펴볼 “교회 치리서”에서는 ‘공적인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평생직의 집사직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에서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 주권 아래에서의 ‘모든 교회의 직분(목사)의 동등성’과 더불어 ‘모든 개교회의 동등성’에 대하여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로마 가톨릭의 위계적인 교권제도와 더불어 여하한 감독제 교회정치 제도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원리에 따라 한 교회 내에서의 모든 직분과 사역자들은 상호간에 수평적인 관계에 있으며, 그 권위와 권세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⁶²

61 장대선,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 291.

62 Cf.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43.

제30조. 우리는 모든 참된 목사들은 유일한 머리이자 유일한 군주이시며, 모든 교회의 유일한 감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어디에서나 동일한 권위와 동등한 권세(동등권)를 가진다고 믿는다. 따라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다스리거나 그것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과 상호화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모든 돌봄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⁶³

‘제31조’에서는 ‘교회 직분자들의 선출과 임직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모든 직분자들은 반드시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또한 그 직분으로의 소명이 공적으로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와 마찬가지로, 당시 재세례파의 경우처럼 개인적인 내적 소명을 주장하며, 사사로이 교회의 지도자로 나서거나 교회를 조직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였다.

제31조. 우리는 그 누구든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교회의 권세를 취하는 것은 불법이며, 다만 가능한 한, 그리고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한, 모든 사람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 . 우리는 항상 이 규칙(합법적인 선거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모든 목사와 장로, 집사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부르심의 증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⁶⁴

이어서 ‘제32조’에서 교회의 모든 회중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교회의 선한 질서와 유지를 위하여 “교회의 법(규정)” 제정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선언하며, ‘제33조’에서는 그러한 인간이 만든 법(규칙)들이 말씀에 대한 순수하고 온전한 순종의 한계를 벗어나 신앙의 양심을 속박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천명함과 동시에, 또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교’와 같은 권징의 필요성을 승인하고 있다.⁶⁵

이와 같이 프랑스 개혁교회는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강력한 교리적

63 장대선,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 299.

64 장대선,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 309.

65 장대선,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 317, 325.

일치와 더불어 질서 있는 교회의 조직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우선 모든 개별 교회의 고유성과 평등성, 모든 직분자들의 선거를 통한 공적인 법적 선출과 그 동등한 권위를 강조하였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통치 주권과 더불어 회중의 대표로 선출된 직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단적 지도체제로서 ‘당회’(consistory)를 통하여 치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민주적인 대의정치 질서를 구현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각 교회들의 전체적인 통일성 유지와 실천적 연대와 연합을 위하여 연합회의체로서 ‘지역 시찰회/노회’(provincial colloque/synode)와 ‘전국적 총회’(nationale synode)를 조직함으로써 제네바 개혁신교회 모범을 전국적 단위의 정치질서로 확대함으로써 이후 개혁신교회 장로교 정치질서의 효시를 보여주었다.⁶⁶

2.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교회치리서』(1559)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1559년 파리 총회에서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참혹한 박해 아래 있던 교회의 질서 있는 조직과 안정적인 보존을 위하여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교회치리서』(*Discipline ecclesiastiques des eglise reformees de France*, 1559)를 함께 작성하여 채택하였다.⁶⁷ 이 “교회치리서” 역시 “신앙고백서”와 마찬가지로 총4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⁶⁸ 비록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서”(1541)의 모범을 따르지만 그것과 비교하여 당시 프랑스 개혁신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또 다른 발전적인 요소들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독특한 점은 먼저 교회의 직분제도와 관련하여, 항존직분에 대하여 “교사”를 제외한 “목사, 장로, 집사” 직분만을 언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신교회의 정치질서에 있어 개별 지역교회(당회, Consistory)의 상호 독립성

66 Cf. 황정욱, “앙트완 드 상디유의 생애와 사상”, 50-51.

67 이 『교회치리서』(*Discipline Ecclesiastique*, 1559)의 영어번역 전문은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34-39를 참조하라.

68 프랑스에서 조직된 모든 개혁신교회와 목회자들은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이 “교회치리서”를 동시에 서명하여 수용할 것이 요구되었고, 이 때 40개 항목으로 작성된 “교회치리서”(1559)는 약 백년 후 낭트칙령이 폐지되기 전에 모인 마지막 노회(1685)에서 교회의 성장과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총14장, 252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Cf. Spijker, 『칼빈의 생애와 신학』, 264.

과 평등성, 그리고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강조함과 동시에, 각 지역교회들의 신학적/교리적 일치와 더불어 교회조직과 질서의 통일성을 보다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연합회의체로서 ‘콜로키’(Colloquy, 시찰회/노회)와 더 큰 지역 규모의 ‘지역적 노회’(혹은 ‘대회’, Provincial Synods) 및 ‘전국적 총회’(National Synods/the General Council) 모임을 제시함으로써 한 개별교회 및 한 도시나 지역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광역 교회회의들의 모범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에 그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랑스 개혁교회는 ‘회중교회적인 개교회주의’ 혹은 ‘위계적인 감독제’로 흐르지 않고서도 전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며, 개별 교회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개혁파 장로교회 특유의 조직과 정치질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서”와는 달리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에서 이러한 ‘지역회의(시찰회/노회)’ 및 ‘광역회의(총회)’와 같은 교회연합 회의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은 기존의 재세레파와 같은 급진적, 열광주의자들과의 구별과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 당시 프랑스 개신교 그룹 안에 라보(LaVau)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에서 이미 많은 교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와 세바치안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의 이단적인 신학사상을 소개하여 전파함으로써 여러 교회에 심각한 분열이 야기되었고, 이것은 박해 속에 있던 신생 개혁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 개혁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보다 명확한 개혁신앙의 기초 위에서 교리적 일치와 함께 각 지역과 전국적인 차원에서 연합회의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각 교회들이 서로를 ‘상호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긴밀하고 통일성 있는 교회조직 및 질서의 유지와 교회의 안전한 보존을 그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⁶⁹

더불어 이러한 발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당시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가형태의 차이에서 비롯된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

69 Cf. 황정욱, “앙트완 드 상디유의 생애와 사상”, 47f.

다. 즉, 스위스는 제네바를 비롯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여러 자유도시들이 연합한 연방제적 국가 형태였고, 또한 그러한 도시들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신앙 공동체들이 혼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도시를 넘어서는 광역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교회조직과 질서를 위한 연합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프랑스는 그 자체로 하나의 통치 권력이 작동하는 단일 국가형태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물론 이때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각 개별교회의 ‘당회’만을 항구적인 조직체로 규정함과 동시에, 한 지역의 ‘시찰회’와 더 큰 지역 범위의 ‘노회’ 및 전국적인 ‘총회’는 교회들의 협력과 연합을 위한 임시적인 회합이며 그 모임을 위하여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매 모임이 해산함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별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개혁신교회 정치체계가 위계적인 감독제로 나아갈 위험성을 미연에 배제하고자 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교회와 시정부가 교회개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며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그 시작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하에 있던 국가정부의 가혹한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정치질서와 직제 및 권징이 지방정부 혹은 국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개혁신교회에 ‘정교분리의 원칙’이 확고하게 정립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프랑스 신앙고백서”와 “교회치리서”는 이후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로 확산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⁷⁰

이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프랑스 개혁신교회의 교회치리서』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제1항’에서 모든 개별 교회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의 개별 교회에 있어 모든 직분자들, 즉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들과 집사들 상호간에 직분의 고유성과 평등성을 개혁신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에 있어 제일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여 선언하고 있다.

70 Cf. 서요한, 『종교개혁사』, 396; 김재운, “개혁 교회법이 한국교회에 가지는 의의”, 『한국개혁신학』 제35권 (2012), 15-17.

제1항.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위에 우월성이나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한 교회의 목회자들 상호간에, 그리고 장로들이나 집사들 상호간에도 그러하다.⁷¹

이어서 제2항-제6항에서 지역 시찰회(혹은 ‘노회’, Colloquium), 지역노회(혹은 ‘대회’, Provincial Synod), 총회(the General Council)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 사항을 원문을 번역하여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2항.** 매 노회(Synod)마다 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여야 하며, 회합이 개최되는 날짜와 장소를 알리며, 시찰회(Colloquium)의 모임들도 마찬가지이다(후략)”. 이어서 “**제3항.** 의장의 임기는 시찰회의 종료 시에 만료되며, 위원회는 의장의 연임 여부 혹은 다른 이를 선출할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규정들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 교회들의 연합 모임이 지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독제’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엄격하게 봉쇄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4항.** 목회자들은 총회(the General Council) 참석 시에 그들의 당회(Consistory)에서 선출된 이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의 장로 혹은 집사들을 대동할 수 있으며, 그들은 노회(혹은 ‘대회’, Synod)에서 제출된 사안들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제5항.** 총회는 교회들의 필요에 따라 회집되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우호적이고도 형제애적인 훈계가 주어지고, 그 후 노회들의 총대인 목회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전체 교회의 일치를 보이기 위하여 성만찬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제6항.** 각 교회의 목회자들은 최소한 한 사람의 장로 혹은 집사를 대동하여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각 지역에서 모여야 한다”고 규정한다.⁷² 나아가 프랑스 개혁교회의 정치질서와 관련하여, ‘제1항’과 연동하여 각 교회의 ‘당회’가 ‘지역 노회’ 및 ‘총회’와의 관계에 있어 본질적으로 각 교회들이 상호 연대하여 협력하는 협의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이 다음의 마지막 두 규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39항.** 어느 교회도 만일 소집이 가능할 경우 지역 노회의 의견 없이 다른 교회들의 유익과 손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다.

⁷¹ Hall & Hall, eds., “*Ecclesiastical Discipline*, 1559”, 134.

⁷² Hall & Hall, eds., “*Ecclesiastical Discipline*, 1559”, 134-35.

그리고 만일 사안이 시급할 경우, 해당교회는 적어도 서신을 통하여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 알리고 의견과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0항.** 이 치리서와 관련하여 여기에 포함된 규정들은 교회의 목적들이 요구하는 바, 우리 가운데 명확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또한 총회의 의견과 동의 없이 어느 한 개인[개별교회]에 의하여 그렇게 함이 허락되지 않는다.”⁷³

계속하여 제7항-제23항에서 개교회의 ‘목회자(목사)’들을 선출하는 방법과 임직과정, 사역과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 그리고 권징사항들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 살펴보자면, 먼저 **“제7항.** 목회자들은 한 사람의 목사와 해당 당회에서 선출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두세 사람의 목회자들과 당회들, 혹은 지역 노회 혹은 그들의 수용여부를 표현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대표들이 참석한 시찰회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 . . 만일 당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반대가 있을 경우 혹은 동의가 양쪽에서 거부될 경우에는 지역 노회에 전체 사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목회자의 자기변호와 더불어 성도들의 수용 여부를 해당 당회 혹은 성도들의 다수의 동의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더불어 **“제12항.** 한 교회의 목회자는 다른 교회의 목회자의 동의 없이 해당 타(他)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다. 만일 타(他)교회의 목회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그 교회의 당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할 수 있다.” 또한 한 교회의 목회자의 임직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전체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5항.** 어떤 이가 성도들의 동의 아래 말씀의 목회자로 세워졌을지라도, 다른 어떤 교회들에서 그의 승인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어 이웃하거나 또 다른 목회자들에 의해 승인되지 못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에 지역 노회가 모여 사안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 여섯명 이상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시찰회에서 이 사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제16항.** 목회자로 선출된 이들은 그들이 평생 동안 목회자로 선출되었음을 인식하여야 하고, 어떤 시기동안 다른 어떤 곳으로 파송될 경우에는 그들이 속한 교회의 필요에 대한 준비가 확실한 경우에만 사임이 허락되어야 한다. 만일 교회들이 그 자신들 외에 성도들을 위한 준비가 불가할 경우에는 예수

73 Hall & Hall, eds., “*Ecclesiastical Discipline*, 1559”, 139.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포기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 그리고 “제20항. 목사는 당회의 허락이나 이웃 교회들의 승인이 없이는 그의 성도들을 떠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에 대한 권징에 대하여, “제23항. 만일 어떤 목회자가 놀랍고도 악명 높은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당회는 무흠한 두세 사람의 목사들을 불러 즉각 면직시킬 수 있다. 만일 범죄한 목회자가 자신에 대한 증언이 중상모략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의 불평들을 지역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목사가 어떤 이단적인 교리를 설교하거나 가르치면,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의 목회자로 구성된 치리회에 의해 즉각 중단시켜야 하고, 지역 노회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의 면직 사유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당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⁴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먼저 ‘목회자(목사)’의 선출은 해당교회 회중이나 당회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지역 시찰회나 노회가 해당교회 대표자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적으로 그 소명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그렇게 임직된 목사는 평생직(종신직)이며,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한 해당교회를 임의로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이렇게 목사의 직분에 대하여 그의 평생직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함부로 그의 사역을 임의로 떠나지 못하도록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에는 당시 프랑스 개혁교회가 처해 있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즉, 개혁교회를 향한 극심한 당국의 박해 아래서 목회자들이 임박한 위험을 피해 마음대로 그 직분을 버리거나, 혹은 임직한 교회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경우를 우려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자면, 이러한 규정들에 담긴 행간의 의미는 박해의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목회사역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목회자의 선출과 사역에 있어 그러한 절차를 통하여 개별 교회들의 독립성과 상호평등성이 본질적으로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74 Hall & Hall, eds., “*Ecclesiastical Discipline, 1559*”, 135-36.

‘개교회주의’나 ‘회중주의’로 흐르지 않고 모든 사안들에 대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상호협력과 상호감독의 협의체적인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이며, 또한 칼빈의 제네바 교회와는 달리 프랑스 개혁교회의 모든 정치체제와 권징치리가 국가나 지방정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인 교회정치 체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개혁교회는 그 시초부터 국가정치 및 권력과는 완전히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24항-제28항에서 ‘장로’와 ‘집사’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24항.** 장로들과 집사들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주관하는 교회의 위원회(the Senate of the Church)를 구성한다. 장로들의 책임은 회중들을 소집하고, 불미스런 일들을 당회(Consistory)에 보고하는 것이다(후략).” 또한 “**제25항.** 장로의 직분은 평생직(종신직)이 아니다(not perpetual)”라고 그 임기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집사들은 당회의 협의에 따라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과 병자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으고 분배하는 일을 맡으며; 그들을 심방하고 가정에서 [세례문답 준비를 위하여] 교리(문답)교육(to catechize in homes)의 일을 한다. 또한 만일 어떤 이가 그 일에 합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사역자로서 평생(perpetually)동안 전념하여 헌신하기로 약속한다면, 교회에서 수용된 형식에 따라 공적으로 교리(문답)교육을 할 수 있도록(to catechize in public) 당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성례를 집행할 수 없다.” 이어서 집사 직분자들의 임기와 관련하여, “**제26항.** [공적인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집사들을 제외한] 다른 집사들의 직분은 공적인 교리교육을 할 수 없으며(not to catechize in public), 그들의 직무는 종신직(평생직)이 아니다(not perpetual). 그러나 그러한 집사들이나 장로들은 교회의 허락 없이 그들의 직무를 그만둘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장로와 집사의 선출과 관련하여, “**제27항.** 교회의 조직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미조직]교회에서는 회중들이 목사와 함께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한다. 그러나 이미 조직이 확립된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 위원회(the Senate of the Church, cf. 장로들과 집사들로 구성되며 목사가 주관함)에서 그들을 선출한다.” 마지막으로, 장로들과 집사들의 권징에 대하여, “**제28항.** 집사들과

장로들도 말씀의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유들에 의해 그들의 직무에서 면직된다. 만일 그들이 당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지역 노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⁵

이러한 규정들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사실들은 기본적으로 ‘장로’들과 ‘집사’들은 회중들에 의하여 선출되고, 목회자가 주관하는 ‘교회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평생직(종신직)’이 아니다. 또한 집사직의 경우, 칼빈의 제네바 교회와는 달리 ‘집사’들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교리(문답)교육을 담당하는 ‘종신직(평생직)의 교사’와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임기직의 집사’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제네바 교회법에서는 하나의 구별된 직분이었던 ‘교사’(박사/교수)의 직분을 여기에서는 하나의 개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교리(문답)교육’을 담당하는 ‘집사’의 직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직접적인 이유는 아마도 당시 박해 아래 있던 프랑스 개혁교회가 자체적으로 독립된 ‘신학교육기관’(신학교)을 설립할 수 없었던 열악한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IV.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시작과 발전에 있어 칼빈과 제네바 교회의 영향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1540년대 이후 불어를 사용하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남부지역에서 위그노 피난민들을 통하여 칼빈의 저서들과 개혁파 신앙이 전파되었으며, 1555년 안트베르펜(Antwerpen)에서 첫 번째 개혁파 교회인 ‘십자가 아래 교회’(Kerk onder het Kruis)가 설립되었다.⁷⁶ 그 초기에 제네바에서 칼빈과 베자에게서 신학훈련을 받은 귀도 드 브레(Guido de Brès, 1522-1567)가 귀국하여 순회설교자로 사역하며 개혁교회를 조직하며 이끌었다(1559).⁷⁷ 그리고 1559년부터 1564년까지 13명의 네덜란드 출신의 학생들

75 Hall & Hall, eds., “Ecclesiastical Discipline, 1559”, 136.

76 Cf. Herman J. Selderhuis, “16·17세기 네덜란드 칼빈주의의 문화와 사회”, 김병훈 외 4인 역, 『비텐베르크에서 도르트까지』 (수원: 합신대학출판부, 2018), 183-85.

77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초기에 지도력을 발휘하며 큰 영향을 미친 귀도 드 브레(Guido de Brès,

이 스위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은 피에르 브롤리(Pierre Brully), 예안 타핀(Jean Taffin), 그리고 필립스 마르닉스(Pillips Marnix) 등이다. 이외에도 영국과 독일 등지에 흩어져 있던 네덜란드 피난민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인적교류와 서신왕래를 통하여 칼빈의 영향력은 지속되었다. 여기에서는 『벨직 신앙고백서』(*The Belgic Confession*, 1561)와 더불어 가장 완성된 형태로 이후 역사에서 개혁신교회 교회법의 표준이 된 『도르트 개혁신교회 질서』(*The Church Order of Dort*, 1619)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의 직분제도 및 정치질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벨직 신앙고백서』(1561)

『벨직 신앙고백서』(*The Belgic Confession*, 1561)는 귀도 드 브레가 개혁신교파 신앙의 자유를 위해 처참하게 박해받고 있던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남부지역의 개혁신교회를 위하여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후 이 신앙고백서는 1565년 안트베르펜 총회(the Synod of Antwerpen)와 1571년 엠덴 총회(the Synod of Emden)에서 먼저 채택되었고,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개혁신교회의 모임이었던 1618-19년 도르트 총회(the Synod of Dortrecht)에서 본문을 최종적으로 수정하여 공식 채택한 이후,

1522-1567)는 벨기에 남부의 작은 도시 몽스(Mons)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박해를 피해 그곳으로 피신해 왔던 프랑스의 위그노들로부터 칼빈의 종교개혁사상을 접하였다. 이후 박해를 피해 영국 런던으로 피신하여(1548) 그곳에 와있던 종교개혁지도자들(마르틴 부써와 폴 요한 아 라스코)과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피난민 개혁신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 1552년에 잠시 귀국하였으나, 곧이어 또 다시 타친 박해를 피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피난하였고, 1556년 당시 그곳에서 영국 피난민 교회를 인도하던 존 낙스(John Knox)와 더불어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었던 존 칼빈(John Calvin, 이때 그 곳의 피난민 교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깐 동안 방문했었음)을 만났다. 이후 스위스 로잔에 있던 개신교 대학에서 테오도르 베자(Theodore Beza)의 지도아래 2년간 성경언어를 공부하고, 베자가 칼빈의 부름을 받고 제네바로 갈 때에 함께 건너가 칼빈에게서 1년 동안 신학훈련을 받았다. 1559년 다시 귀국하여 벨기에와 네덜란드 남부지역의 여러 도시들의 순회설교자로 섬기며,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서”에 따라 개혁신교회를 조직함과 동시에 『벨직 신앙고백서』(1561)를 작성하였고, 개혁신앙을 지키다 순교로 삶을 마쳤다(1567.5.31). Cf. Thea B. Van Halsema, *Three Men Came to Heidelberg and Glorious Heretic: The Story of Guido de Brès*,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과 귀도 드 브레』 (서울: 성약, 2006), 111-65; 이상규, “귀도 드 브레와 네덜란드 신앙고백”, 『칼빈시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가들』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4), 258-7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1563) 및 『도르트 총회 신앙표준서(도르트 신경)』(1619)과 더불어 개혁파 교회의 “3대 일치신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⁷⁸

이 『벨직 신앙고백서』의 제27조-제32조에서 우리의 관심 주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의 보편적인 공교회’로서의 개혁교회의 정체성(제27조), ‘참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교통’(제28조)과 ‘참된 교회의 표지’(제29조), ‘교회의 사역과 직분제도’(제30조), 그리고 ‘사역자들의 소명’(제31조) 및 ‘교회의 질서와 권징’(제32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27조’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공교회’로서의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제27조.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공교회를 믿고 고백한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성화되고 인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전적인 구원을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룩한 회중이며 회합이다. . . .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구속되어 있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퍼져 흩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힘으로,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⁷⁹

다음으로 ‘제30조’에서 교회의 사역과 직분, 그리고 그 주요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목사, 장로, 집사’ 세 가지가 언급되며, 그 구체적인 주요 직무들이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1559)에서 목사, 장로, 집사들로 구성되는 ‘교회 위원회’(the Senate of the Church)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개념의 ‘교회

78 이 『벨직 신앙고백서』(1561)와 관련하여 그 상세한 배경 역사에 대하여는 Nicolaas H. Gootjes, *The Belgic Confession: Its History and Sourc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그리고 그 상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Klaas Stam, *Everything in Christ: The Christian Faith Outlined according to the Belgic Confession in Harmony with Three Forms of Unity*, 송동섭 역, 『만유의 그리스도: 세 일치신조와 함께한 벨직신앙고백서 개요』(전주: 레포르만다, 2017); Clarence Bouwman, *Notes on the Belgic Confession*, 손정원 역,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서울: 솔로몬, 2016)을 참조하라.

79 김영재 편, 『기독교 신앙고백』(서울: 영음사, 2011), 474f (원문을 참조하여 번역을 수정함).

위원회'(the Council of the Church)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⁸⁰ 여기에서 우리는 현재 한국장로교회에서 시행되는 제도와 연관하여 살펴보자면, 그러한 개혁교회의 교회조직에 있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Consistory)와 목사, 장로, 집사가 모두 참여하는 '교회운영위원회'(the Council of the Church)가 담당하는 직무와 기능을 유의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당회'는 본질적으로 권징문제를 처리하는 '치리회'(교회법에 따른 일종의 사법적 기능을 가진 재판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며, '교회(운영)위원회'(cf. 지금 우리의 '제직회'?)는 교회의 일반적인 운영 및 행정과 관련한 모든 일들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직분자들의 협의체(당회, 교회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직무수행은 최종적으로 모든 회중들의 수용과 동의를 확인받아야 하고(cf. 지금 우리의 '공동의회'?), 재신임 여부의 결정을 통해 평가와 더불어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0조.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영적 질서(the spiritual polity)에 따라 치리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참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성례를 집행할 목회자들 혹은 목사들(Ministers or Pastors)이 있어야 하고, 목사들과 함께 교회위원회(the council of the Church)를 구성할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수단들에 의해 참된 종교가 보존되고, 참된 교리가 그 방침대로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한 악한 자들이 영적인 방법으로 훈련되고 회복되는지,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는지를 살피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규례와 일치하게 신실한 자들이 선출될 때 모든 일들이 선한 질서 안에서 잘 시행될 것이다.⁸¹

80 이것은 '치리회'로서의 '당회'(Consistory)와는 다른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구성되는 '교회운영위원회' 혹은 '제직회'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1 김영재 편, 『기독교 신앙고백』, 476f(원문을 참조하여 번역을 수정함).

또한 ‘제31조’에서는 교회의 각 사역을 담당할 직분자들의 선출 방법과 그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모든 사역자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선거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야 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통치 주권아래 그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직분자들의 상호 동등성과 더불어 유기적인 상호협력과 화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2조’에서는 교회의 치리와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여러 규칙들(certain ordinances)을 제정하는 것과 더불어 권징의 필요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와 집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질서에 따라 교회의 정당한 선거를 통하여 각자의 직분에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 .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므로 모두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유일하신 총감독이시요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이 침해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자가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을 인하여 특별히 더 존경하며, 가능한 불평이나 분쟁이나 다투는 일 없이 그들과 화목해야 함을 우리는 선언한다.

제32조.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이들이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함께 연구하여 어떤 규칙들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들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낸 것들과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입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양심을 구속하고 강요하는 법들을 배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치와 통일성을 조성하고 보존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만을 용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출교 또는 교회의 권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 상황에서 필요하다.⁸²

82 김영재 편, 『기독교 신앙고백』, 477(원문을 참조하여 번역을 수정함).

2. 네덜란드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1619)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은 초기의 어려운 박해 상황에서도 질서 있는 교회를 조직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영국, 독일 등 각 곳에 흩어져 피난 상태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총회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던 베이젤 회의(*Convention of Wezel*, 1568)에서 칼빈이 작성한 “제네바 교회법규서”(D’ordonnances *Ecclesiastique*, 1541)와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Discipline *Ecclesiastique*, 1559)의 모범을 참조하여 “교회법”(De *Wezeschen artikelen*) 초안을 작성하였다.⁸³ 또한 그로부터 3년 후, 엠덴 총회(the Synod of Emden, 1571)에서 다시 수정 보완하여 총53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교회법”을 작성하였다.⁸⁴ 네덜란드 개혁교회들의 첫 총회였던 1571년 엠덴 총회 이후 1586년 헤이그 총회까지 여러 번의 총회 모임에서 “교회법”에 대한 수정 보완

83 베이젤 회의(1568)에서 작성된 ‘교회법’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지역의 시찰회, 2장: 말씀의 봉사자와 교사, 3장: 교리문답교육, 4장: 장로, 5장: 집사, 6장: 성례, 7장: 결혼, 8장: 권징조례.” Cf. 김재운, “개혁 교회법이 한국교회에 가지는 의의”, 17-23.

84 Cf. Spijker, 『칼빈의 생애와 신학』, 266-70. 당시 극심한 박해를 피해 수많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자들이 스위스의 제네바, 영국의 런던, 독일의 엠덴과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각 곳에 흩어져 피난민 교회를 세웠고, 그 가운데 엠덴(Emden)은 특히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숙소”(Herberg der Gemeete Gods)라고 불렸으며, 바로 이곳에서 1571년 10월 4-13일 열흘 동안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첫 번째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엠덴 총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의 일치를 위해 ‘벨지 신앙고백서’를 공식 채택함과 더불어 교회를 질서 있게 조직하고 안정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교회법’을 작성하고 채택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총 53항목으로 작성된 이 ‘엠덴 교회법’(1571)은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1599)의 모범을 더욱 강조하며 구체화하여 ‘제1항’에서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들 위에, 어떤 말씀의 봉사자도, 어떤 장로나 집사도 다른 직분자들 위에 지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지배하려는 모든 불신과 미혹 대신에 동등함이 주어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신앙고백의 일치 위에서 개혁교회들의 연합 원리를 천명함과 동시에, 특히 프랑스 개혁교회와의 국제적인 연합과 일치, 그리고 상호 연대와 결속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네덜란드 (지역)교회들 사이의 하나됨이 신앙고백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형제들은 훌륭하게도 네덜란드 교회들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프랑스 안에 있는 (개혁)교회들의 신앙고백에 서명하여 프랑스 교회들과도 하나됨과 교제를 증거함과 동시에, 반대로 프랑스 교회들의 직분자들도 네덜란드 교회들의 신앙고백에 함께 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제53항에서 “모든 교회는 한 총회에서 달리 결의할 때까지 이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개혁교회들이 하나의 신앙고백과 하나의 교회질서(교회법) 아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로 결속되어 있음을 천명하였다. Cf. 김재운, “개혁 교회법이 한국교회에 가지는 의의”, 23-26; 허순길, 『개혁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 (광주: 쉼페르 레포르만다, 2017), 41-44.

작업이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특히 1586년 헤이그 총회에서 다시 수정 보완된 교회법은 처음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성격의 개혁교회 총회로 모였던 ‘도르트 총회’(1618.11.13.-1619.5.29.)에서 흔히 “도르트 신경”으로 지칭되는 『도르트 총회 신앙표준서』(*The Canons of the Synod of Dort*, 1619)⁸⁵와 함께 총86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채택된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The Church Order of Dort*, 1619.5.28에 공식 승인되어 선포됨)는 그동안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작성되고 발전된 모든 ‘교회법’들을 총정리한 표준적인 문서가 되었다.⁸⁶

그렇게 채택된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1619)는 이후 1816년 당시 네덜란드 국왕이었던 윌리엄 1세(William I)에 의해서 “개혁교회의 치리를 위한 일반규칙”(Algemeen Reglement voor het bestuur der Hervormde Kerk)이 제정되어 대체됨으로써 유명무실해 졌으나, 1834년 울름(Ulrm)교회의 헨드릭 드 콕(Hendrick de Cock, 1801-1842) 목사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국가교회(Nederlandse Hervormde Kerk, NHK)로부터의 ‘분리운동’이 일어나면서 ‘분리’(Afscheiding)측인 ‘기독교 개혁교회’(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의 첫 총회가 1836년 암스테르담(Amsterdam)에서 개최되어 다시 표준 교회법으로 회복되어 채택되었고,⁸⁷ 또한 미국으로 이주하여 설립된 네덜

85 이 ‘도르트 총회’(the Synod of Dort)의 역사와 더불어 “도르트 총회 신앙표준서(도르트 신경)(1619)의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Herman J. Selderhuis, “도르트 총회의 역사와 신학”. 김병훈 외 4인 역. 『비텐베르크에서 도르트까지』 (수원: 합신대학출판부, 2018), 211-47; Clarence Bouman, *Notes on the Canons of Dort*, 손정원 역. 『도르트 신경 해설』 (서울: 솔로몬, 2016); Cornelis Pronk, *Expository sermons on the Cannons of Dort*, 황준호 역. 『도르트 신조 강해』 (서울: 그 책의 사람들, 2012)를 참조하라.

86 Cf. 김재운, “개혁 교회법이 한국교회에 가지는 의의”, 27-28; 박준수, “네덜란드 개신교회의 정치체도와 교회법에 대한 연구”, 노영상 편,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법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회법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17), 101-29. 이와 같이 도르트 총회에서 승인되고 채택된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The Church Order of Dort, 1619)의 전문에 대한 영어 번역문은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5-84를 참조하고, 또한 이 문건의 한역과 더불어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허순길, 『개혁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 (광주: 셀페르 레포르만다, 2017)를 참조하라.

87 Cf. W. Robert Godfrey, “Calvin and Calvinism in the Netherlands”,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ed., W. Stanford Reid (Grand Rapids: Zondervan,

란드 개혁신교회를 가운데 RCA(Reformed Church in America/미국 개혁신교회) 교단과 여기서 분리된 CRC(The Christian Reformed Church/기독교 개혁신교회, 1857년 분리되어 조직됨) 교단이⁸⁸ 교회직제와 정치를 위한 표준 교회법으로 채택하였다(cf. CRC에서는 이후 1914/1974 두 번에 걸쳐 수정 보완함).⁸⁹ 이와 같이 현재로는 네덜란드 국교회를 제외한 모든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와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등지에 흩어져 있는 개혁신교회들도 형편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하였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 ‘도르트 개혁신교회 질서’(1619)를 표준 교회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도르트 개혁신교회 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성목차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⁹⁰

1982): 91-120. 1834년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의 ‘제1차 분리’ 운동 이후, ‘신칼빈주의’(Neo-Calvinism)를 주창하며 교회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를 중심으로 다시 ‘제2차 분리’ 운동이 일어나 ‘애통’(Doleantie, 돌레안치)측인 ‘네덜란드 개혁신교회’(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 1886)가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네덜란드 국가교회(NHK)로부터 분리된 ‘분리’(1834)/‘애통’(1886) 양측은 1892년에 다시 연합하여 새로운 교단인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신교회들”(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s, 1892)을 조직하였다. Cf. J. D. Bratt, “아브라함 카이퍼”, 『복음주의 인물사』(서울: CRC, 2018), 337-43;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용인: 킹덤북스, 2010).

⁸⁸ 이 CRC(The Christian Reformed Church/기독교 개혁신교회) 교단은 이보다 먼저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1628년에 설립하여 조직한 RPDCA[Reformed Protestant Dutch Church in America, 현재는 RCA(Reformed Church in America/미국 개혁신교회)로 지칭됨]로부터 1857년에 분리되어 조직되었다. Cf.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5-76, 185-86. 또한 미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의 상세한 역사와 관련해서는 John Kromminga,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 Study in Orthodox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49); Gerald F. De Jong, *The Dutch Reformed Church in the American Colonies* (Grand Rapids: Eerdmans, 1978); James D. Bratt, *Dutch Calvinism in Modern America: A History of a Conservative Subcul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4)를 참조하라.

⁸⁹ Cf. 김재윤, “개혁신교회법이 한국교회에 가지는 의의”, 28-32;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154-58. 여기서 언급된 “*The Church Order of Dort*, 1619”와 더불어 1914년 미국 CRC에서 수정 보완하여 채택한 “*Christian Reformed Church Order*, 1914”의 본문은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5-84를 참조하라.

⁹⁰ 여기에서는 “*The Church Order of Dort*, 1619”,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5-84를 참조하면서 주로 허순길, 『개혁신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에서 번역된 본문을 사용하였다.

*** 서론: 총칙 (제1조)**

I. 교회의 직분 - (1) 일반적 규정;

(2) 말씀봉사자: 목사/선교사/목사후보자 양성/신학생/
장로/집사 (제2조-25조)

II. 교회의 회의들 - (1) 일반적 조항; (2) 당회; (3) 지역회;

(4) 총회 (제26조-48조)

III. 교회의 책무와 활동 - (1) 예배; (2) 성례;

(3) 목회적 보살핌 (제49조-65조)

IV. 교회의 권징 - (1) 일반적 항목; (2) 교회회원의 충고와 권징;

(3) 직분자들의 충고와 권징 (제66조-80조)

*** 결론적 조항 (제81조-제82조)**

여기에서는 특히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에 나타난 직분제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면서, 이 교회법이 가지는 또 다른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먼저 ‘제1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개혁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고백적 일치와 더불어, 교회의 유일한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원리와 사도적인 교회 조직과 질서를 선언한다. 그리고 ‘제1조 2항’에서는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위해 “교회법”에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조. 교회 질서의 기초와 분류

1. 개혁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의 교리의 요약인 신앙고백(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도르트 신경)에 전적인 복종을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며, 교회 내에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한다는 사도적인 명령을 존중하여, 교회적 조직과 활동을 다음 조항들로 규정한다.
2.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선한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교회 질서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은 교회의 직분, 교회의 회의, 교회의 예배, 성례, 의식과 교회의 권징이다.⁹¹

다음으로 '제2조'에서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직분'의 종류와 더불어 각 직분자들의 평등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 직분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세운 직분은 말씀봉사자(목사), 장로, 집사이다. 이 직분들은 권한과 직책에 있어서 서로 다를 뿐, 품위와 명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⁹²

이어 '제3조'에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격과 관련하여, 공적인 신앙고백에의 순종과 더불어 특히 교회의 '남자회원'들만 직분자로 선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⁹³ '제4조'에서 직분자들의 선출과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먼저 당회에서 배수 공천하여 회중들에게 공시하고, 규칙에 따른 회중의 선거로 선출하며, 임직 전에 공표하여 회중의 동의를 구한 후 공예배 중 규정된 의식문에 따라 취임하도록 하였다. '제5조'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목사, 장로, 집사, 교수)는 공식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서에 대한 동의가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

계속하여 제6조-제17조에서는 '말씀봉사자'(목사)에 대하여, 그 '자격', '임직과 취임', 그리고 '해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한다.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다음 세 가지 조항만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제13조. 목사의 종신임무

91 허순길, 『개혁신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 61.

92 허순길, 『개혁신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 61. 이 조항은 1914년 미국 CRC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유지되고 있다: "[교회의] 직분은 네 가지이다: 말씀봉사자들, 신학교수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이다(The offices are of four kinds: of the Ministers of the Word, of the Professors of Theology, of the Elders, and of the Deacons)."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6. 이렇게 하여 현재로는 칼빈이 확립한 '교회의 4 직분론'이 원형 그대로 회복되어 유지되고 있다.

93 미국 CRC에서 1914년 개정된 현재 본문은 이 조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제3조. 신학교수, 장로, 집사는 그 누구도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말씀과 성례의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후략)".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6.

법적으로 한번 부름을 받은 말씀봉사자(목사)는 평생 교회 봉사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이유 없이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당회의 승인과 지역회와 총회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말씀봉사자의 직무

1. 말씀봉사자의 직무는 주의 말씀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회중에게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공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 언약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2. 말씀봉사자는 장로들과 함께 회중과 동료 직분자들을 감독하고, 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을 위로하고,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선한 질서 가운데 보존하고, 권징을 시행하며, 회중을 위한 목자적인 관리를 한다.

제17조. 교회 직분자들 간의 의무와 동등성

하나님의 말씀봉사자들 사이의 직무와 그 밖의 다른 일에서도 당회의 판단에 따라 상호 동등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상호 동등성은 또한 장로들과 집사들 사이에도 유지되어야 한다.⁹⁴

다음으로 칼빈이 “제네바 교회법규”(1541/1561)에서 교회의 항존직분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였던 ‘교회의 교사’ 직분은 교회의 성장과 역사적 발전 따라 이제는 개별교회에 속한 직분이 아니라 ‘총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신학교)에서 목사직분을 가진 ‘교수’로서 ‘목사후보자를 양성하는 직무’로 보다 제도화되고 구체화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94 허순길, 『개혁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 68-69. 이러한 ‘교회 직분자들의 동등성’에 대하여 현행 CRC “교회질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직무에 대한 책임들과 함께 목회적 사역들과 더불어 다른 사항들에 있어서 동등성(equality)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가능한 당회(the consistory)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시찰회(the Classis)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러한 동등성은 장로들과 집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되어야 한다.”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8.

제19조. 목사 후보자 양성

1. 교회들은 말씀봉사자 양성을 위한 기관(신학교)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관은 총회가 임명한 이사회를 통해 총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2. 신학 교수로 임명된 말씀봉사자들의 임무는 그들에게 맡겨진 교과목들로 신학생들을 교육하여 교회들이 말씀봉사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단과 오류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다.⁹⁵

마지막으로, ‘장로’와 ‘집사’의 직무와 임기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각각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22조. 장로의 직무

1. 장로의 직무는 말씀봉사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여, 모든 회원들이 교리와 생활에서 복음에 따라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하고, 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신실하게 방문하고, 가르치며, 그릇되게 처신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 장로는 자기 교구 안에 있는 회원들의 가정을 매년 적어도 한번 이상은 방문하고 당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그리고 장로들은 말씀봉사자들과 함께 불신과 불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고, 또 성례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3. 나아가, 장로들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들이므로 회중 가운데 모든 일이 적당하고 선한 질서 가운데 행해지도록 돌봐야 한다.
4. 끝으로, 장로들의 직무는 유익한 조언과 권고로 말씀봉사자들을 돕고 그들의 품위와 품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제23조. 집사의 직무

1. 집사직의 특별한 직무는 회중 속에 자비의 봉사에 대한 선한 진행을 살피고,

95 허순길, 『개혁신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 70.

회중 가운데 현존하는 공핍과 어려움을 익히 알고,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자비를 나타내도록 권고하며, 나아가 일반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2. 그리고 집사들은 헌물(헌금)을 모으고 관리하며 이것들을 필요를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어주는 것이다.
3. 나아가, 집사들은 그들의 정책과 관리에 관하여 당회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장로와 집사 직분의 임기

장로들과 집사들은 지역 교회의 규정에 따라 2년, 혹은 그 이상 봉사해야 하고, 적절한 비율로 매년 물러나야 한다. 당회가 물러나는 직분자에게 교회의 사정과 유익을 위해 다음 임기를 더 봉사하게 하거나, 그들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곧바로 재선을 위한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물러가는 직분자들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채워져야 한다.⁹⁶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교회의 각 직분자들의 직무상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것인데,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말씀봉사자(목사)는 장로들과 함께 회중과 동료 직분자들을 감독하고 . . .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선한 질서 가운데 보존하고, 권징을 시행하며, 회중을 위한 목자적인 관리를 한다”(제16조 2항), 그리고 “장로의 직무는 말씀봉사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며, . . . 유익한 조언과 권고로 말씀봉사자들을 돕고 그들의 품위와 품행을 감독하는 것이다”(제22조 1, 4항), 마지막으로 “집사들은 그들의 정책과 관리에 관하여 당회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제23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들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각 직무의 고유성과 함께 그 권위와 명예에 있어 평등성이 강조되는데(제2조),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96 허순길, 『개혁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 71-73. 이러한 ‘장로와 집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현행 CRC “교회질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장로들과 집사들은 2년 동안 봉사하며, 교회가 처한 어떤 상황과 유익을 위하여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매년마다 그 수의 절반은 사임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9.

봉사자들 사이의 직무와 그 밖의 다른 일에서도 당회의 판단에 따라 상호 동등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 상호 동등성은 또한 장로들과 집사들 사이에도 유지되어야 한다”(제17조)고 재천명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직분자들도 다른 직분자들을 지배하지 않아야 하며”(제81조), 또한 각 직분자들은 상호간에 서로 감동하고 형제애적인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 안에서 품위 있는 선한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할 책임이 모든 직분자들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 외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1619)에 나타난 교회의 정치질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먼저 ‘교회의 회의’들과 관련하여 “세 종류의 회의들, 즉 당회, 지역 대회(노회), 전국 대회(총회)”가 있음을 규정한다(제26조).⁹⁷ 이때 ‘당회’와 관련하여 “모든 교회에는 직분자들(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된 당회가 있어야 하며, 당회는 교회의 일반적 정치를 위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제34조 1항).⁹⁸ 또한 ‘지역회’는 “각 교회 당회에서 파송된 한분의 목사와 한분의 장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제39조 1항). 그리고 ‘총회’는 “모든 지역회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회의이며, 각 지역회는 두 목사와 두 장로를 총회에 대표로 파송”하도록 규정한다(제43조 1항). 마지막으로,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1559)와 네덜란드 개혁교회 “엠덴총회 교회법”(1571)에서 가장 먼저 ‘제1항’으로 강조되어 선언되었던 ‘모든 개별 지역교회와 모든 직분자들의 상호 독립성과 평등성의 원리’가 여기에서는 ‘지배의 금지’ 조항으로 마지막 최종결론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재천명되고 있다. “제81조. 지배의 금지: 어느 교회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교회들을 지배하지 않아야 하고, 어느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들을 지배하지 않아야 한다.”⁹⁹

97 ‘교회의 회의들’에 대하여 현행 CRC “교회질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교회에는 다음 네 가지 종류의 교회 회의들(ecclesiastical assemblies)이 유지되어야 한다: 당회(the Consistory), 시찰회(the Classical Meetings), 지역 대회(the Particular Synod), 그리고 일반/전국 대회(the General or National Synod)가 그것이다.”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9.

98 ‘당회(the Consistory)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행 CRC “교회질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7조. 모든 교회에는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로 구성되는 당회가 있어야 하고, 매주 최소한 한번은 모아야 한다. . . . 단, 지역 내규에 의하여 장로의 수가 3명 이하일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집사들이 당회에 참여할 수 있다.”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79.

V. 결론과 제언

우리는 지금까지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을 통하여, 특히 ‘교회의 개혁’ 분야에서 ‘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의 개혁’에 있어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하여 극심한 박해와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어 낸 프랑스와 네덜란드 ‘개혁교회’(Reformed Church) 특유의 교회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의 주요 원리들과 실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특히 그러한 원리들과 실천은 암묵적이고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당시 개혁교회가 처한 엄중한 역사적인 상황과 목회현장 속에서 수많은 신학적 논의와 실천적인 협의를 거쳐 가장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그것을 실천할 명문화된 “교회법”을 정립하였고, 그에 따라 어느 곳에서든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동일하게 ‘질서 있는’ 교회를 조직하고 유지함으로써 항상 교리적/실천적인 ‘교회의 일치’(the unity of the Reformed Church)를 동시에 추구하였다는 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한 개혁교회의 발전과 성장의 역사에 있어 질서 있는 교회의 조직과 안정적인 보존에 있어 근간이 되었던 ‘개혁교회의 교회법’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규서』(*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1541/1561)와 『프랑스 개혁교회의 교회치리서』(*Discipline ecclesiastiques des eglise reformees de France*, 1559), 그리고 가장 완성된 형태로서 이후 개혁교회 교회법의 표준이 된 『도르트 개혁교회 질서』(*The Church Order of Dort*, 1619)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개혁교회 교회법’들을 통하여 개혁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정립한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의 중요한 원리들과 특징들을 다시 몇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99 허순길, 『개혁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 97. 이러한 ‘지배의 금지’ 규정은 현행 CRC “교회질서”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4조. 어느 교회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교회들 위에 그 권위를 두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어느 목회자도 다른 목회자들 위에, 어느 장로 혹은 집사도 다른 장로들 혹은 집사들 위에 그렇게 할 수 없다(No Church shall in any way lord it over exercise authority over Churches, no Minister over other Ministers, no Elder or Deacon over other Elders or Deacons).” Hall &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184.

(1) 개혁교회의 “교회법”들에서 구현된 직분제도와 정치질서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질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사도적 기원에 따른 것이며,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이 대원칙에서 벗어나는 법이나 규칙을 임의로 만들 수 없다는 종교개혁신학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그의 말씀이 가르치는 질서와 직분 외에 불필요한 인위적인 법이나 제도, 그리고 규칙들을 과도하게 만들어 교회와 회중을 구속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며, 항상 교회의 조직과 올바른 질서의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만 간략한 형식으로 규정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2) 개혁교회의 정치질서에 있어 제일의 대원칙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원리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그의 몸된 온 교회 공동체에 위임하시고, 동시에 그가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하여 다스리시며 모든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직제와 정치질서에 있어 그리스도에 의한 ‘위임정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소명, 그리고 성령의 주권적인 은사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교회 회중들의 투표와 선거, 그리고 동의와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모든 직분자는 단순히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 곧 소명에 근거해야 하며, 또한 회중들의 선거라는 선출과정을 통하여 그러한 소명을 공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개혁교회 정치와 직제에 있어 또 다른 대원칙인 교회 공동체 회원들의 직분자 선출에 의한 ‘대의정치의 원리’이다.

(4) 교회의 유일한 머리되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삼중직분에 근거하여,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직분(통상직분/항존직분)은 ‘목사(교사), 장로, 집사’이다. 이때 ‘항존직분’(통상직분)의 의미는 결코 ‘종신직분(평생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지상에 있는

가견적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러한 세 가지 직분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분명하게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주권의 위임에 따라 분배된 직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이 그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없고 독점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모든 직분들은 그 직무의 고유성과 함께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언제나 '어느 직분자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직분자들 위에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계속하여 천명해 왔다.

(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며, 그 '말씀의 우선성'에 따라 교회의 직분들에는 '말씀의 권위'에 따른 일정한 질서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에 따라 그가 온 교회에 맡기신 모든 일들이 항상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성령께서는 항상 교회에 임재하셔서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그의 몸된 교회를 접붙이시고 연합시키심과 동시에 또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을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다. 나아가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역자들에게 각양 은사들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오직 그러한 성령의 은사에 근거하며, 모든 직분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충성된 섬김이다. 즉, 모든 직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의 봉사과 상호 섬김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7) 교회의 유일한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분량'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각양 은사'에 따라 택함을 받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오직 상호간의 사랑의 봉사 속에서 온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일하고, 서로 협력하여 연합하고 화목함으로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책무가 주어진다.

(8)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제정하셨고, 또한 그의 말씀이 가르치는 선한 질서로부터 이탈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 모두가 항상 먼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주의하여 살필 것이 요구되며, 더불어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상호간에 형제애적인 협력 속에서 서로를 살피며 견제하고 상호 감독할 책무가 동시에 주어진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 먼저 그러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그러한 책임은 모든 교회 회중들 앞에서(cf. 한국장로교회의 공동의회) 공적으로 평가되어 재신임 여부 혹은 공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9) 개혁교회의 정치질서에 있어, 각 지역교회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보편적인 공교회’를 대표하며, 완전하게 그 ‘고유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과 평등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언제나 ‘어느 교회도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계속하여 천명하여 왔다. 그러나 동시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교리와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며, 서로 연대하여 연합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지역회의(노회)’와 ‘광역회의(총회)’를 두고 서로 협력하고 상호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혁교회는 ‘회중교회적인 개교회주의’와 ‘위계적인 감독제’를 동시에 배격한다.¹⁰⁰

(10) 개혁교회는 그 시초로부터 항상 교회의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신앙고백서’와 ‘교회법’을 함께 작성하여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혁교회의 역사적 발전에서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항상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일차적 근거가 되는 ‘신앙고백서’의 엄격성과는 달리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다루는 ‘교회법’은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 안에서 교회의 성장과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발전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조국인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첫 교회가 설립되고(cf. 황해도 소래교회, 188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조선야소교장로회 총회, 1912)가 조직된 이후,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사에 그 유래가 없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장로교회는 백년이 넘어가는 그 간단치 않은 역사

100 이러한 개혁교회의 독특한 정치질서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제와 더불어 동방정교회, 영국 성공회와 감리교 및 루터파의 감독제뿐만 아니라 재세례파의 회중주의 정치제도와는 본질적으로 그 궤를 달리하는 특유의 성경의 원리에 따른 정치질서를 제도화한 것이다.

속에서 수많은 분쟁으로 인한 엄청난 분열의 아픔을 또한 겪어 왔다. 더불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노출하고 있는 자화상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요, 그 미래 또한 총체적인 측면에서 침체의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한 안타까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연구한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와 정치질서의 중요한 원리들과 특징들’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장로교회의 직분제도 및 정치질서와 관련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먼저 교회의 정치질서에 있어 ‘교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장로교회의 안타까운 분열의 역사 속에는 물론 중요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 야기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교권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로 다투고 분열해 왔음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언제나부터인가 ‘노회장’ 혹은 ‘총회장’에 피선되어 그에 따른 명예와 교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파벌을 형성하여 싸우거나, 이를 위해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른바 ‘금권 선거’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따라서 개혁교회의 정치질서 원리에 따라 각 ‘시찰회’나 ‘노회’, 그리고 ‘총회’는 위계적인 교권의 차원이 아니라 언제나 각 교회간의 협력과 연대, 그리고 일치와 연합을 위한 질서로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개혁교회의 정치원리에 따르면, 각 ‘지역회’(시찰회/노회)와 ‘광역회의(총회)’는 어떤 권위적 위계질서(hierarchy of authority)로서 개별 교회의 ‘당회’ 위에 있는 계층적인 ‘상회’(上會)의 개념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개혁교회 정치질서에 있어 가장 우선하여 강조되어 온 중요한 원칙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느 교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른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도르트 개혁교회 질서』, 제81조). 그러므로 각 개교회의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차원의 ‘교회 회의들’(노회/총회) 자체가 애초에 ‘위계적인 교권’의 개념이 아님을 재인식하고 이를 올바르게 회복하여 실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함께 언급되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오늘날 각 교회공동체의 모든 실천적인 활동들이 개별교회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또한 서로 경쟁적으로 교회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웃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개교회주의’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회와 총회에서의 교회정치와 행정적인 사무 처리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각 지역교회들의 회중들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여 서로 연합하여 예배와 친교, 그리고 전도(선교)와 구제 활동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 참여적 활동들을 통해서도 공동으로 연대하고 연합함으로써 ‘교회적 일치’를 실천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그동안 한국교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의 역사 속에서 이른바 많은 “대형교회”들이 출현하였고, 그러한 교회들에 자연스럽게 큰 영향력과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이루어졌다. 비록 그러한 교회들이 가지는 긍정적인 역할과 순기능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이러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된 목회자들의 다양한 일탈’이나 ‘교회를 사유화하여 세습하는 문제’ 혹은 ‘후임자 문제’로 인하여 격렬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이슈로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전도(선교)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함으로써 (cf. 소위 교회 출석을 기피하는 ‘가나안 성도들’ 문제) 교회를 침체시키는 중요한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의 소유이며, 항상 그의 통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단지 ‘교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깊이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다시금 오직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칭지기’임을 재인식함과 동시에 그가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진정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야 할 문제는 하나의 개교회 안에서 ‘목회자(목사)들 사이의 위계적인 질서’의 문제이다. 한국장로교회 안에서는 ‘위임(담임)목사’와 다른 ‘부교역자들’ 사이에 ‘상호 협력과 동사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갑/을’의 위계적인 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에 의하면 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은 본질적으로 ‘협력과 동사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개혁교회의 사역원칙에 따르면 목회자들 사이에 ‘직무의 분할’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혁교회에서는 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와 성례집행과 교육과 심방 등 모든 목회자의 사역들’에 있어 서로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고 협력하여 사역하는 ‘동사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확립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봉사자들 사이의 직무와 그 밖의 다른 일에서도 당회의 판단에 따라 상호 동등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도르트 개혁교회 질서』, 제17조). 그러므로 우리는 한 교회에서 ‘위임(담임)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보다 유연하게 함으로써 함께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 사이에 상호 섬김의 진정한 ‘협력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과 더불어 그것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지혜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4) 한국장로교회의 직분제도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한 교회 안에서 ‘각 직분들 사이의 위계적인 서열관계의 문제’이다. 즉, 일반적인 이해에 있어 교회의 직분이 ‘목사-장로-(장립)집사/권사-서리집사-일반회중’의 순서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서열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일종의 ‘승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직분제도에 의하면, 교회의 세 가지 항존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은 그 자체로서 각각의 ‘고유성’을 가짐과 동시에 각 직분들 사이의 ‘동등성(평등성)’이 제일의 원칙이며, 따라서 각 직분들 사이에 그 어떤 위계적인 서열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가장 우선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세운 직분은 말씀봉사자(목사), 장로, 집사이며, 이 직분들은 권한과 직무에 있어서 서로 다를 뿐, 품위와 명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선언하며, 동시에 “어느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들을 지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르트

개혁신교회 질서』, 제2조, 제81조).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각 직분의 고유성과 평등성을 유지하면서, 오직 상호 존경과 사랑의 봉사로서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교회의 각 직분자들의 임기’에 관한 것이다. 한국장로교회에서는 본래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라는 의미의 ‘항존직’의 개념을 ‘종신직(평생직)’의 개념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한번 ‘장립 받은 직분자’들은 별다른 면직 사유가 없는 한 은퇴 시까지 평생 동안 그 직분을 당연히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또한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임기문제와 관련하여 “개혁신교회의 직분제도”는 ‘목회자(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경우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목사’의 경우 모든 개혁신교회의 교회법은 그 직분이 ‘항존직’임과 동시에 ‘종신직(평생직)’으로 규정하며, 면직 등의 권징치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임직한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목사의 직분에 대한 개혁신교회의 이러한 규정은 당시 당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던 역사적 상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그 행간의 사정을 고려하자면, 당시 개혁신교회는 목회자의 임직도 엄격하게 하였지만, 한번 임직을 받은 목회자가 자신의 임의로 사직하거나 임직한 교회를 버리고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게 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목회자에 대한 소명의 엄중성과 더불어 박해 하에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사실상 순교적 사명감으로 그 직무에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로와 집사’의 임기에 대하여 “제네바 교회법규”에서는 매 1년의 임기마다, 그리고 “도르트 개혁신교회 질서”에서는 매 2년의 임기마다 당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하거나 혹은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보다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개혁신교회가 역사적으로 실천해온 역사적인 교회법들에 근거하여 각 직분자의 임기문제와 관련하여 제안하자면, 현재 한국장로교회의 대부분은 위임목사의 경우 6년마다 1년의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목사’의 경우 그 직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목회자로서의 ‘직분’과 ‘사역’의 개념을 구별하여, 각 노회에 소속된 신분으로서 목회자로서의 ‘직분’ 자체는 면직의

사유가 없는 한 은퇴할 때까지 계속하여 유지하되 위임된 각 해당교회에서의 '사역'은 '6년 사역임기제'로 하여 안식년 후 복귀할 때에 그동안의 사역의 결과에 대하여 교회 회중들에게 재신임을 다시 묻고 그 사역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사의 '사역 임기제'를 도입하면 현재 한국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목회자들의 일탈 문제, 교회의 사유화 문제나 교회세습, 후임자 계승 등의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 스스로도 계속하여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의 목회사역에 있어 더욱 주의하여 스스로를 살피며 헌신적으로 충실하게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로와 집사'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또 다른 일상의 생업에 전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대체로 교회의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로와 집사'의 임기도 목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6년 사역임기제'로 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짧은 '2년/3년의 사역임기제'로 하여 그 기간만큼은 교회의 직무에 보다 집중하고 헌신하여 더욱 충실하게 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 Soli Deo gloria! -

[참고문헌]

- Beza, Theodore. *The Life of John Calvin*. Durham, England: Evangelical Press, 1997. 김동현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서울: 목회자료사, 1999.
- Bouwman, Clarence. *Notes on the Belgic Confession*. 손정원 역. 『벨직 신앙 고백서 해설』. 서울: 솔로몬, 2016.
- _____. *Notes on the Canons of Dort*. 손정원 역. 『도르트 신경 해설』. 서울: 솔로몬, 2016.
- Bratt, James D. *Dutch Calvinism in Modern America: A History of a Conservative Subcul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4.
- _____.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Timothy Lasen 편집. 『복음주의 인물사』. 서울: CRC, 2018, 337-343.
- Bucer, Martin. *Von der waren Seelsorge und dem rechten Hirtendiens* (1538). 최윤배 역. 『참된 목회학』. 용인: 킹덤북스, 2014.
- Calvin, Joh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36), *Calvini Opera*, Vol. I.
- _____. 『기독교 강요』[1536 초판 한-라틴어 대역].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_____.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 *Calvini Opera*, Vol. II.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기독교 강요』(1559). 김종흡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6.
- _____.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église et du Culte a Genève, Proposé au Conseil par Ministres”(1537). *Calvini Opera*, Vol. X: 5-14.
- _____. “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1537).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The Library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48-55.
- _____. “교회 설립 시안”(1537). 박건택 편역. 『칼뱅 작품선집』 Vol. II . 서울:

-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323-36.
- _____. “Projet D’ordonnances Ecclésiastique”(1541). *Calvini Opera*, Vol. X: 15-30.
- _____. “Draft Ecclesiastical Ordinance”(1541).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The Library Christian Classic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56-72.
- _____. “제네바 교회법 초안”(1541). 김명순, 김현수, 코넬리스 반 담. 『칼빈의 예배개혁과 직분개혁』. 서울: 성약출판사, 2013, 153-165.
- _____. “제네바 교회 법규”(1541). 박건택 편역. 『칼뱅 작품선집』, Vol. I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130-51.
- _____.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 de 1561”. *Calvini Opera*, Vol. X: 91-124.
- _____.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635-680.
- _____. “L’ordre du Collège de Genève”(1559). *Calvini Opera*, Vol. X: 65-90.
- _____. “제네바 아카데미의 규정”(1559). 황대우 역. 『갱신과 부흥』 제13권 (2013), 84-99;
- _____. “제네바 콜레주 규정”(1559). 박건택 편역. 『칼뱅 작품선집』, Vol. VI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11, 617-634.
- De Jong, Gerald F. *The Dutch Reformed Church in the American Colonies*. Grand Rapids: Eerdmans, 1978.
- Godfrey, W. Robert. “Calvin and Calvinism in the Netherlands”.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ed. W. Stanford Reid. Grand Rapids: Zondervan, 1982, 91-120.
- Gootjes, Nicolaas H. *The Belgic Confession: Its History and Sourc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 Gordon, Bruce. *Calvi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9. 이재근 역. 『칼뱅』. 서울: IVP, 2018.
- Hall, David W. & Joseph H. Hall, eds. *Paradigms in Polity: Classic Readings in Reformed and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4.

- Kromminga, Joh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 Study in Orthodox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49.
- Lindberg, Cater. *The European Reformations*. West Sussex, UK: John Wiley & Sons Ltd., 2010. 조영천 역. 『유럽의 종교개혁』. 서울: CLC, 2012.
- Luther, Martin.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지원용 역. 서울: 키클디아사, 1993.
- Manetsch, Scott M. *Calvin's Company of Pastors: Pastoral Care and the Emerging Reformed Church*. Oxford, UK: The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신호섭 역.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회의 활동과 역사: 개혁파 목회자 모임의 모델』.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 _____.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0.
- Parker, T. H. L. *John Calvin: A Biograph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5.
- _____. 『존 칼빈』.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 Pronk, Cornelis. *Expository Sermons on the Cannons of Dort*. 황준호 역. 『도르트 신조 강해』. 서울: 그 책의 사람들, 2012.
- Reid, W. Stanford, e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Grand Rapids: Zondervan, 1982.
- _____.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이훈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Schaff, Philip.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 The History of Creeds*. Grand Rapids: Baker Books, 1983 Reprinted.
- _____. *The Creeds of Christendom, Vol. III: The Evangelical Protestant Creeds*. Grand Rapids: Baker Books, 1983 Reprinted.
- Selderhuis, Herman J. “16·17세기 네덜란드 칼빈주의의 문화와 사회”. 김병훈 외 4인 역. 『비텐베르크에서 도르트까지』. 수원: 합신대학출판부, 2018, 181-209.

- _____. “도르트 총회의 역사와 신학”. 김병훈 외 4인 역. 『비텐베르크에서 도르트까지』. 수원: 합신대학출판부, 2018, 211-47.
- Stam, Klaas. *Everything in Christ: The Christian Faith Outlined according to the Belgic Confession in Harmony with Three Forms of Unity*. 송동섭 역. 『만유의 그리스도: 세 일치신조와 함께한 벨직신앙고백서 개요』. 전주: 레포르만다, 2017.
- Van Dam, Cornelis. “칼빈의 직분개혁”. 『칼빈의 예배개혁과 직분개혁』. 서울: 성약출판사, 2013, 91-112.
- Van Halsema, Thea B. *Three Men Came to Heidelberg and Glorious Heretic: The Story of Guido de Brès*.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과 귀도 드 브레』. 서울: 성약출판사, 2006.
- Van't Spijker, Willem. *Calvin. Biographie und Theologie*. Germany: Vandenhoeck & Ruprecht, 2001. 박태현 역. 『칼빈의 생애와 신학』.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영재 역. 서울: 품만출판사, 1985.
- Welker, Michael, et al. ed. *Europa Reformata: Reformationsstädte Europas ihre Reformatoren*.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GmbH, 2016. 김재진 외 16인 역. 『종교개혁, 유럽의 역사를 바꾸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김선권. “칼뱅이 말하는 ‘잘 정돈된 삶’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 『한국개혁신학』 제42권 (2014), 8-37.
- _____. “칼뱅의 교회 정치제도와 교회법에 대한 연구”. 노영상 편,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법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회법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17, 11-48.
- 김영재(편). 『기독교 신앙고백』. 서울: 영음사, 2011.
- 김재운. “개혁 교회법이 한국교회에 가지는 의의”. 『한국개혁신학』 제35권 (2012), 8-46.
- 박경수. “개혁교회의 요람 제네바 아카데미에 관한 연구”. 『종교개혁과 교육』.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7, 175-204.

- 박준수. “네덜란드 개신교회의 정치제도와 교회법에 대한 연구”. 노영상 편, 『개혁신교회 전통의 교회법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교회법에 대한 비교 연구』. 서울: 총회한국교회연구원, 2017, 101-129.
- 서요한. 『종교개혁사』. 서울: 그리심, 2013.
- 이상규. “귀도 드 브레와 네덜란드 신앙고백”. 『칼빈시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가들』.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4, 258-174.
- 이정숙. “칼빈의 제네바 목회”. 『칼빈, 그후 500년』.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두란노, 2009, 39-58.
- 이형기. 『장로교의 장로직과 직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_____. “[칼빈의] 직제론: 루터와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한국칼빈학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79-343.
- 임중구. 『칼뱅과 제네바 목사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장대선. 『프랑스 신앙고백 해설』. 서울: 세움북스, 2017.
- 정성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2010.
- 최운배. 『잊혀진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황대우. “칼빈의 교회 직분론: 교회 건설을 위한 봉사과 질서”. 『칼빈과 교회』.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07, 173-193.
- 황정욱. “앙트완 드 상디유의 생애와 사상”. 『칼빈 이후의 개혁신학자들』.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13, 35-65.
- 허순길. 『개혁신교회 질서 해설: 도르트 교회 질서』. 광주: 쎬페르 레포르만다, 2017.

[Abstract]

A Histo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hurch
Organization
and Discipline in the Reformed Church:
From Calvin's '*Ecclesiastical Ordinance*'(1541) to
'*The Church Order of Dort*'(1619)

Eun Soo Kim

(Baekseok University, Academic Research Professor, Systematic Theology)

This study especially dealt with the history of development on the 'Church Organization and Discipline' of the Reformed church after the 16th century Protestant Reformation. For the study and analysis, first of all, the starting point is John Calvin's '*Projet D'ordonnances Ecclésiastique*'(1541) and its revised version, '*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1561), and related his major theological works. And then, we also analyzed '*The French Confession of Faith*'(1559/1571) and '*Discipline ecclesiastiques des eglise reformees de France*'(1559) of the Reformed church in France. Finally, we look at close to '*The Belgic Confession*'(1561) and '*The Church Order of Dort*'(1619), which is the most completed form of church order for the Reformed church. In doing so, as an application of the study, I tried to find out some important improvements for the church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Key Words: the Reformation, Reformation of the Church, the Organization and Politics of the Reformed Church, Ecclesiastical Ordinance of Geneva Church, Ecclesiastical Discipline of the Reformed Church in France, the Church Order of Dort